

2016년 책임연구보고서

김학신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16년
책임연구보고서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실태 분석 및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김학신

목 차

제1장 서론	217
제1절 연구의 목적	217
제2절 연구의 추진 배경과 범위 및 방법	220
1. 연구의 추진 배경	220
2. 연구의 범위	221
3. 연구의 방법	223
제2장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의 의의 및 도입 배경	224
제1절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의 용어 정의	224
제2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명칭 유형 및 도입 배경	226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명칭 유형	226
2.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 및 추진 배경	228
제3절 외국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용 실태	231
1. 미국	231
2. 호주(시드니)	236
3. 영국(런던)	239
4. 프랑스(파리)	242
5. 캐나다(벤쿠버)	244
6. 기타(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두바이)	247

제3장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 활용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분석	250
제1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실태	250
1.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250
2.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분석	253
3.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상 장·단점	254
제2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상 문제점	256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상 문제점	256
가. 웨어러블 폴리스캠 부착의 불완전성	256
나. 장시간 소요로 인한 중요한 촬영 영상만 업로드 필요	257
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배터리 용량의 부족	258
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 영상의 확인 불가	259
2.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에 따른 제도상 문제	260
가. 헌법상 사생활 침해 문제(프라이버시권)	260
나. 형사법상 적법절차의 문제	262
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물의 증거 능력 문제	264
라. 강력(살인)사건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 기록 보존 문제	266
마.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 영상 보존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267

제4장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효과와

실효적 개선 방안	270
제1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효과	270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 경찰 활동의 책임과 투명성 확보	270
2.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방지와 정당성 확보	272

3.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자의 태도 변화	275
4. 민·형사 소송 제기 시 촬영 영상의 활용	276
5. 경찰관 법집행에 따른 무력 사용 감소 여부	278
제2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따른 개선 방안	279
1.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자료의 보관 및 관리 개선	279
2. 웨어러블 폴리스캠 기기 선택 기준의 개선안	281
3.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 범위 개선	282
4.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시스템의 실용적인 개선 방안	285
5.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286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289
참고문헌	297

표 목 차

〈표 3-1〉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배부 현황	251
〈표 3-2〉 웨어러블 폴리스캠 재배치 시범운영 배부 현황	251
〈표 3-3〉 2015~2016 웨어러블 폴리스캠 월별 입출고 및 영상등록 현황 ..	252
〈표 3-4〉 미국 법무부,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 도입에 따른 장·단점	255
〈표 4-1〉 2012~2015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법처리 현황	273
〈표 4-2〉 2012~2015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법처리 현황	274
〈표 5-1〉 웨어러블 폴리스캠 관련 미국의 각 주(州)별 법률 규정	294

그 림 목 차

〈그림 2-1〉 웨어러블 폴리스캠 (Body Worn Camera)	232
〈그림 2-2〉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도입 후, 실질적인 효과	233
〈그림 2-3〉 호주의 신체 부착 카메라(BWV-Body Worn Video)	237
〈그림 2-4〉 영국의 신체 부착 카메라(Body Worn Video)	241
〈그림 2-5〉 프랑스의 웨어러블 폴리스캠(Caméras à la boutonnière) ..	243
〈그림 2-6〉 캐나다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245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2016년 5월 11일 KBS 시사프로그램인 「추적 60분(뒤바뀐 인생, 그들은 왜 재심을 원하는가?)」에서 두 개의 사건이 소개되었다.

첫 번째는 2003년 사건으로 경기도 포천에서 음주 운전자 A가 B를 조수석에 태우고 운행하던 중, 추돌 사고로 A가 사망하고 조수석에 있던 B는 중상을 입었다. 그러나 처음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B가 운전을 하였고, A는 조수석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대법원도 경찰의 진술과 같이 조수석에 있었던 B가 운전한 것으로 확정 판결을 하였다.

두 번째는 2009년 사건으로 A씨 부부는 야간자율학습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인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도로상에서 음주운전 검문 중인 현장 경찰관들과 시비가 붙었고, 다툼 중, A씨에 의해 경찰관의 팔이 순식간에 뒤틀렸고,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다. 그러나 A씨는 다툼 중, 경찰관의 팔을 꺾지 않았고, 경찰관이 한 행동은 헐리웃 액션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¹⁾

위 두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억울하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사건들이다. 만약 두 사건 모두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그들의 신체에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이 장착되어 출동부터 모든 사실관계가 영상으로 촬영이 되었다면, 억울하다는 피고인과 이로

1) 2014. 12. 19 뉴스타파를 통해 방영된 <경찰의 팔은 누가 꺾었나?> 방송과 2010. 5. 2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증인신문조서 자료를 참조.

인한 시시비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위의 두 사건 이외에도 다양한 경찰 활동분야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은 필요하다. 특히, 적법한 공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찰관에 의한 공권력 남용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도모할 수 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의 공권력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CCTV와 더불어 범죄예방의 역할을 하고 있다.²⁾ 특히, 주취폭력자들이 경찰관서, 구청,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난입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폭언, 폭행 등의 주취 난동행위에 있어서도 폴리스캠의 활용성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또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주된 목적은 아니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 공권력의 침해 행위에 대한 근절, 입증 차원의 일환으로서도 그 역할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무집행 사건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의 확보가 어렵고, 그 결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들이 많아 경찰관들에 의한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 행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³⁾

이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다양한 경찰활동 분야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2015년 10월 우리 경찰은 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을 시범운영하기 시작하였다.⁴⁾ 또한 이를 위해 2015년 10월 경찰청은 훈령으로 「웨어러블 폴리

2)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발간한 ‘2015 정보화통계집’에 의하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설치된 CCTV는 약 795만대 정도가 된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정보화통계집, 2014. 12. 31, 428면.

3)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인원은 2012년 274명, 2013년 186명에서 2014년 826명, 2015년 703명으로 최근 2년간 1500명이 넘었다. 박남춘, 공무집행 방해 구속 2년간 3,054명 구속영장 기각된 사람도 1,500명 넘어, 2016. 9. 21, 더불어 민주당 보도자료 참조.

스 캠(Wearable Police Cam) 시스템 운영 규칙」을 제정하였다.⁵⁾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폴리스캠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시 그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경찰관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본 규칙의 제정 이유이다.

이러한 제정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국민을 감시하기 위한 제도 장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은 피의자와 피해자 그리고 경찰 모두를 보호하려는 조치이다.

현재 일선 경찰서(영등포경찰서, 마포경찰서, 강남경찰서)와 경찰서 관할 지구대를 중심으로 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보급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위 경찰서의 현장 지구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에 따른 다양한 의견들을 심층 인터뷰하였고, 이에 대한 현장의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하였고, 더불어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에 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실태와 사용에 따른 다양한 현실적, 기술적, 제도적, 법률적인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차후 모든 경찰관들

4)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부르는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고, 바디 캠(body cam),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바디 worn 카메라(body-worn camera), 온 바디 카메라(on-body camera), 웨어러블 카메라(wearable camera), 바디 마운티드 카메라(body-mounted camera) 등 경찰관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를 부르는 용어는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으로 통칭하고자 하며, 이러한 종류에 관하여는 뒤에 후술하기로 하겠다.

5) 경찰청 훈령 제778호(2015. 10. 19).

의 대국민 서비스 및 적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도모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함에 있어 그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제2절 연구의 추진 배경과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추진 배경

현 정부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민생치안의 역량을 강화하며,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경찰분야의 중요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10대 분야 핵심과제 중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관공서에서의 난동,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주취폭력 등 정당한 공무의 집행을 무력화 시키며 방해하는 행위, 무차별적인 문지마 폭행 및 살인 등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및 정책적인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폴리스캠 도입에 따른 시범운영을 거친 이후, 현장 경찰관들에게 폴리스캠을 착용하고 근무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이러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범죄나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확보하기 위한 훌륭한 장비이다. 특히 범죄현장에서 범죄 증거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폭행, 강도, 가정폭력, 교통사고, 피의자 추적 사건 등에 활용 될 것이다.

또한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방지, 시민과 경찰, 범죄자 등 서로간의

마찰과 충돌을 해결하면서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중 몸에 부착하게 되면 공무수행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폴리스캠을 착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경찰관에 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올바른 활용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4. 11 행정자치부는 U-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활용한 현장 경찰관의 지원 서비스를 구축하게 되었다.

경찰관의 근무복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교통분야, 생활안전 분야 등 현장 경찰관의 업무에 맞게 국산기술로 개발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2.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 아래와 같이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과 추진배경,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은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의 의의 및 도입 배경으로 우선, 각 국가마다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는 폴리스캠의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통일된 용어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명칭 유형 및 도입 배경을 검토하고, 외

국 즉, 미국, 호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두바이 등 각 국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용 실태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은 현재 우리 경찰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이 활용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폴리스캠 시범운영에 따른 실태와 운영상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폴리스캠을 활용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 가령, 웨어러블 폴리스캠 부착의 불완전성, 업로드까지에 장시간 소요되는 문제점, 폴리스캠 배터리 용량의 부족 등 다양한 활용상 문제점과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제도적인 문제점으로는 헌법상 사생활 침해 문제(프라이버시권), 형사법상 적법절차의 문제,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물의 증거능력 문제, 영상기록 관리 등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경찰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이에 대한 실용적인 효과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폴리스캠을 활용한 경찰 활동의 책임과 투명성 확보와 폴리스캠의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자의 태도 변화,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방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따른 정당성의 확보 등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폴리스캠 사용에 따른 개선 방안으로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자료의 보관 및 관리, 기기 선택의 기준안 마련, 폴리스캠의 촬영 범위, 교육시스템의 실용적인 방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 부분은 실제 현장에서 경찰서 지구대의 현장 경찰관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여 현실성 있게 구성하였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보고서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 경찰관들의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특히, 본문의 주요 문헌 자료들은 주요국가 대사관을 통해 입수한 각 국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관련 외국 경찰 자료와 폴리스캠을 신체에 부착하고 근무하는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되었음을 밝힌다.

본 연구 보고서의 실효성을 위해 심층 인터뷰한 경찰관서는 영등포경찰서의 중앙지구대, 여의도지구대 그리고 마포경찰서의 홍익지구대, 서강지구대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 및 운용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뷰를 하였는데, 근무 중 바쁜 시간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 하여 주신 현장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함을 전한다.

제2장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의 의의 및 도입 배경

제1절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의 용어 정의

경찰관의 신체나 제복에 부착하여 경찰관이 보고 듣는 영상과 음성을 전자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이동식 소형 카메라⁶⁾는 각 국가마다 부착위치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다양하고, 사용의 목적도 경찰활동의 양상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특히, 영미국가에서는 이에 대한 용어로 바디 카메라(Body Camera)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나, 바디 worn 카메라(Body-Worn Camera;BWC), 온 바디 카메라(On-Body Camera), 웨어러블 카메라(Wearable Camera), 바디 마운티드 카메라(Body-Mounted Camera), 단추구멍 카메라(Caméras à la boutonnière), 보행 카메라(Caméras Piétons), 신체카메라(Körperkamera), 어깨카메라(Schulterkamera), 우리나라 경찰에서 사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등 각 국가마다 부르는 용어가 정말로 다양하다.

현재 전 세계에 다양한 종류의 신체 부착 카메라가 개발되어 시판 중이고, 그 종류에 따라 머리카 헬멧, 안경, 제복주머니나 뱃지 등에 탈부

6) White, M., 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4), p.12; 남궁 현,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3호, 2014, 31-32면 재인용.

작 할 수 있는 기기가 이용되고 있다.⁷⁾

이에 경찰관의 신체나 제복에 부착하여 촬영되고 있는 기기가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일성 있는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체 부착 카메라의 호칭을 통일하기 위해 201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제정되었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이란 용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그 명칭을 통일하도록 하겠다.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이라 함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⁸⁾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웨어러블 폴리스캠”이라 함은 경찰공무원의 신체 또는 근무복 등에 부착되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경찰장비로서 다음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첫째,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을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야간의 녹화 기능을 포함한다.

둘째,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FullHD급 이라 함은 화면을 구성할 때 점 같은 최소 단위인 화소를 순차적으로 보내주는 것을 주사라고 하는데, 이런 주사선이 가로 1920선, 세로 1080선을 곱해서 화면을 빈틈 없이 꽉 채워주는 화질을 말한다.⁹⁾

7)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 Primer on Body-Worn Cameras for Law Enforcement (Washington DC, 2014), p.5; 남궁 현, 앞의 논문, 32면 재인용.

8) 경찰청 훈령 제778호, 2015.10.19 제정.

9)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3974&cid=50324&categoryId=50324>(2016. 8. 3 검색). FullHD는 기존 LCD PDP TV에 기본 사양인 HD급보다 화질이 2배 이상 개선된 기술로 일반 TV 사양인 SD급보다는 6배 이상 화질을 개선한 기술이다. HD TV의 경우 화면을 보여주는 패널의 해상도가 1280 * 720 또는 1366 * 768인 반면, Full HD TV의 경우 1920 * 1080으로 전체 픽셀의 개수는 2배나 된다. 같은 42인치 사이즈에서 비교하면 풀 HD TV가 HD TV보다 화면의 픽셀 수도 많고 픽셀 사이즈가 더 작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425&cid=42107&categoryId=42107>(2016. 8. 3 검색).

셋째,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녹화 시야각 120도 이상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시야각은 약 120도 이다. 물론 시야각의 수치가 클수록 더욱더 넓은 화면을 폴리스캠에 녹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시야각이 넓을 경우에는 화면이 왜곡되고 주변부의 화질이 저하될 수도 있어 적절한 시야각은 110도 -130도이다.

넷째,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액정표시장치를 통한 영상기록 재생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인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에 사용자 정보를 등록한다던가, 무선으로 영상을 전송할 경우에는 암호화하여 전송해야 한다.

제2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명칭 유형 및 도입 배경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명칭 유형

현재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부르는 용어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이는 신체에 부착 부위에 따라 다르고, 기능에 따라 명칭이 구분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전 세계 국가마다 그 명칭이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대다수의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명칭보다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효과나 기기에 대한 보안, 시민들의 인식, 기기 구입을 위한 예산 확보 등에 치중하다보니 아직 명칭에 대하여는 통일되어 있지 않다.

현재 우리 경찰의 경우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그 명칭을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언론, 방송, 관련 분야 교수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국의 경우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이라는 용어 이외에도 앞서 본바와 같이 경찰관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를 다양한 명칭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들을 국가별로 명칭을 정리해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바디캠(Body Cam), 바디 worn 카메라(body-worn camera) 등으로 호칭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웨어러블 카메라(Wearable Camera)를 단추구멍 카메라(Caméras à la boutonnière) 또는 보행카메라(Caméras Piétons)로 호칭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2015년에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웨어러블 카메라를 지급하여 사용하고 있지 않았지만,¹⁰⁾ 2016년에 들어서 NSW(New South Wales Police Force) and Queensland Police Service) 주 경찰청은 경찰활동 장비로 신체부착용 영상녹화기를 도입하고 있는데, 호주는 BWV(Body Worn Video) 즉, 바디 worn 비디오라고 명명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앞의 호주와 마찬가지로 테이저사(Taser)에서 제작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으며, 바디 worn 비디오(Body Worn Video)로 명명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현장 경찰관들에게 시중에서 판매중인 기성제품인 웨어러블 카메라인 고프로(Go Pro Hero3+)를 시범적으로 착용하게 한 바는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신체카메라(Körperkamera) 내지 어깨카메라(Schulterkamera)

10) 이는 호주의 New South Wales Police Force 및 Queensland Police Service를 대상으로 하여 수집한 자료이다. 경찰청, 외국 경찰 자료 참조.

라고 명명하고 있다.¹¹⁾

이처럼 각 국가마다 경찰관 신체에 부착된 카메라를 부르는 명칭도 여러 가지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호칭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호칭되고 있는 것들을 모두 총괄하여 우리 경찰청의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근거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으로 통일하여 명칭하고자 한다.

2.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 및 추진 배경

현 정부는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과 더불어 민생치안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치안분야의 국정과제들이다.

특히,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국가기관 등의 공공서비스에서의 난동, 주취자 및 악덕 민원인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행위 등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침해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핵심과제이며, 이러한 문제들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도 피해를 보기에 이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시키는 것은 결국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우리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을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3년 10월

11) 독일에서의 폴리스캠이란 특수조끼에 장착된 소형 비디오카메라로서 경찰관의 어깨 등 몸에 걸치고 출동하여 경찰의 제반 상황을 촬영하는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학, 폴리스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일고찰, 世界憲法研究(第)22卷 2號, 2016, 111-112면.

~12월 중 치안부분 행정자치부 ‘U-서비스 지원 사업’의 과제발굴 위원회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다.¹²⁾

이후 2014. 2. 28 행정자치부 ‘U-서비스 지원사업’ 과제발굴위원회에서 치안분야에 2개의 과제가 선정되었는데, 그 중 하나의 과제로 <웨어러블(Wearable) 동영상 촬영 시스템>이 선정되었다.

이후, 2014. 10 웨어러블 카메라 사업에 대한 법적인 검토와 법령해석상의 검토를 거쳤다.¹³⁾

그리고 경찰청 각 국, 관의 수요조사,¹⁴⁾ 경찰청 내부 8,191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⁵⁾ 등을 거쳐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¹⁶⁾

물론 경찰청은 해외 주요 선진국의 활용사례 및 관련 지침 자료를 수집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경찰의 웨어러블 카메라 영상녹화 지침 및 프랑스 등 5개국 경찰의 활용 사례집, 미국 웨어러블 카메라 활용 관련 미

12) 행정자치부 ‘U-서비스 지원사업’이란 행정자치부에서 정부 3.0 등 국정과제 수행 지원을 위해 첨단 IT기술(유비쿼터스 기술 -RFID/USN, IoT 등- 과 차세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터 등)을 행정업무와 접목한 ‘U-서비스’의 표준모델 개발 및 확산 가능성을 검증하는 사업을 말하며,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되면 확산 사업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1차년도 시범사업은 기술검증, 제도 정비 등이고, 2·3차년도 확산 사업으로 단계로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13) 웨어러블(Wearable) 폴리스캠 촬영에 따른 법적 검토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개괄적 수권 조항에 근거한 경찰행정작용으로서 위험방지활동이며, 범죄수사(강제수사)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로써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

14) 2014. 11 경찰청 각 국, 관의 수요조사에 의하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위기관리에서는 경찰초동작전부대에서 대간첩·대테러작전의 현장기록을 위해 필요하고, 생활안전에서는 지역경찰의 112신고 및 집단폭력, 강력사건 등 발생 현장 기록을 위해서 필요하고, 이외에도 성매매, 가정폭력, 사행행위, 교통사고 등 단속현장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후 규제개혁법무과의 법령해석 질의시에는 112신고 출동 등 지역경찰업무, 재난상황, 음주단속 등에는 적합하지만, 집회관리용, 단순행정벌 부과(과태료) 사건, 성매매 단속 등에는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15) 2015. 6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경찰관 대상 8,191명이 참여하여 97%가 찬성하였다.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16) 2014. 11 ‘웨어러블(Wearable) 동영상 촬영 시스템’ 사업 추진이 결정되고, 기획재정부는 행정자치부의 ‘U-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배정을 통해 ‘웨어러블(Wearable) 동영상 촬영 시스템’ 사업 8.05억을 배정하였다.

국시민자유연합(ACLU), 미국 경찰행정연구포럼(PERF) 보고서 등이다.

2015. 11. 1부터 시범 운영을 할 때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생활 안전 기능 78대, 교통안전 22대)를 서울, 부산, 경기남부 및 북부, 충북, 충남, 경북, 경기남부, 광주, 제주지방경찰청으로 구분하여 예하 23개의 경찰서에 골고루 웨어러블 카메라를 배부하였다.

최근까지 이에 대한 경찰청의 운영실태 분석에 의하면, 경찰청에서 제공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기존에 지급된 유사 장비 및 시장에 시판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보다 사용방법 및 절차가 복잡하고,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부진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상 및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배터리 용량 부족,¹⁷⁾ 전원을 켜는데 시간이 걸려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이 곤란하거나, 업로드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불편 사항 등의 사용상 문제와 증거 제출 시 관련 부서(형사, 여청)에서도 확인이 가능토록 조치가 필요하고, 입출고 절차의 복잡, 절차상 모든 영상을 업로드해야 하므로 경찰관이 사용자체를 꺼려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 되고 있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에는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모든 영상을 업로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범죄 증거 등 필요한 영상만을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는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맞게 관련 훈령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시범운영을 위해 전국의 경찰서 단위로 분산하여 소량씩 배치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관리나 성과측정 등이 곤란하여 경찰서 지구

17) 웨어러블 카메라를 시범 운영할 시기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2시간이었는데, 현재 각 지구대에서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그 보다도 더 짧았는데, 보통은 1시간 정도이고, 30분 만에 방전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미국 시카고 경찰의 경우, 착용하게 될 웨어러블 카메라는 한번 충전으로 72시간 촬영할 수 있고 고화질로 음성·영상이 모두 기록된다고 한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11572(2016. 3. 10 검색).

대의 생활안전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재배치를 하였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성화를 위해 특정 경찰서(영등포경찰서, 마포경찰서, 강남경찰서) 단위에 대량 배치하는 형태로 시범운영 방식을 전환하였다. 이러한 전환방식을 통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적극 활용과 이를 통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재배치를 추진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치안 환경이 복잡한 서울경찰청을 중심으로 하여 집중 배치하고자 하였다.¹⁸⁾

제3절 외국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용 실태

1. 미국

현재 미국은 매년 130만 건의 강력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미국 경찰관의 생명이 위협에 노출됨과 함께 경찰관에 의한 범죄자의 과잉 진압에 대하여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2014년 8월은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10대 흑인 소년이 경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진압의 논란 소지를 줄이고, 순찰 및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등의 카운티·시 경찰서에서는 경찰관의 신체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8)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16. 5.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대한 통계가 없고, 활용에 있어서도 현장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착용을 꺼려하는 분위기이며, 그 결과 2016. 7. 1 기준으로 재배치하였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의 행동이나 행태가 녹화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고 또한 제약이 되고 있고, 특히 문제가 발생시 시스템 로그 등 감찰의 요구도 경찰관의 심리적 부담감으로 위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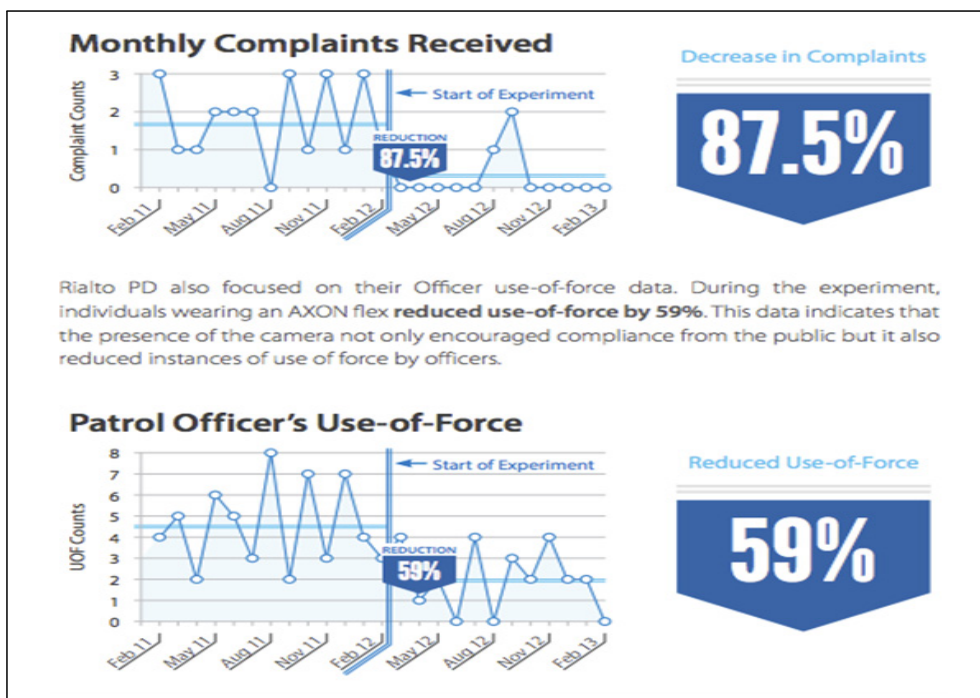
<그림 2-1> 웨어러블 폴리스캠 (Body Worn Camera)¹⁹⁾



실제로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 주의 LA 북동부 샌버나디노 카운티(San Bernardino County)의 리알토(Rialto)시에서 바디 캠(Body Cam)을 도입하여 경찰관 120명에게 폴리스 캠을 부착한 후, 경찰서장은 바디 캠을 활용한 사건 및 사고 발생 건수의 증감(增減)을 실험하였는데, 그 결과 2012년 폴리스 캠을 도입하여 사용한 후부터 경찰관에 대한 민원이 크게 감소됨을 보여 주었다.

19) 미국의 경우, 웨어러블 폴리스캠 (Body Worn Camera)은 각 주(州)마다 선택하는 제조회사에 따라 형태가 다양하다.

<그림 2-2>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도입 후, 실질적인 효과



출처: <https://estima.wordpress.com>(2016. 5. 13 검색).

즉,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도입 후, 경찰관에 대한 불평민원 신고가 감소하였고,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도입 이전과 비교해서 시민들의 경찰관에 대한 불평 민원 신고가 87.5%가 감소하였으므로 보여주고 있다. 경찰관이 법집행을 위해서 경찰 무력 사용은 절반 이상인 59%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서부 샌디에이고(San Diego)의 경우에도 2015년에 40%가 감소하였고, 경찰관이 법집행을 위해서 경찰 무력을 사용한 것은 절반 이상인 46%가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²⁰⁾

이처럼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 했을 때 보다 웨어러블 폴

20) <https://estima.wordpress.com>(2016. 5. 13 검색).

리스캠을 착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경찰무력 사용이 2배 높았다. 즉,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했을 경우에는 법집행 과정에서 공권력 남용 등 경찰 활동을 조심하려 한 것이 역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경찰관이 부착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경찰과 시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기기로 미국인들은 인식하게 되었고, 이에 맞추어 2014. 12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을 확대 발표하고, 이를 위해 T/F 설치하면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예산도 승인하였다.

미국은 경찰복(넥타이, 옷깃 등)에 소형카메라를 부착하여 교통단속, 범인검거 등 경찰의 외근활동 상황에서 수집된 영상을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경우, 2016년 6월 기준으로 미국 전체 경찰청 중 1/3정도가 도입하고 있다.²¹⁾

캘리포니아주 LA 경찰은 시범적으로 경찰관 30명을 대상으로 몇 달간 다양한 종류의 소형 동영상 촬영 장치인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오디오와 비디오의 녹화기능이 있어 자동차의 블랙박스처럼 교통, 충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에 증거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 시범기간이 끝난 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행하게 되면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약 600개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구매할 예정이며, 경찰관의 과잉 진압이나 불법행위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²²⁾

미국의 볼티모어 시(市)도 경찰에 의한 무차별적인 공권력 남용을 억제하고, 경찰에 의한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2016. 5. 23부터 시(市) 경찰 산하 경찰관에게 웨어러블

21)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17919(2016. 6. 13 검색).

22)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 LA경찰, 유니폼에 동영상 촬영 장치 ‘바디 카메라’ 부착, 참조.

폴리스캠을 지급하였다.²³⁾

볼티모어 시는 2014년 한 해 동안 경찰 공권력 남용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 부터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무려 1100만 달러(한화 약 125억원)를 지불하였다고 한다.²⁴⁾

앞으로 매년 500명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폭동 사태를 겪은 볼티모어 시는 이렇게 매년 500여 명씩 늘려 2018년에는 볼티모어시 전체 경찰 약 25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도입이 시(市) 경찰 산하 전체 경찰로 마무리되면, 볼티모어시 경찰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찰국이 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볼티모어시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구입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향후 5년간 1,280만 달러(한화 약 146억원)를 예상하고 있으며,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구입 비용은 비싸지만, 경찰관에 의한 실수로 피해자에게 물어주는 소송 비용에 대비하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⁵⁾

일리노이주 법은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부착을 의무화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부착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근거 규정은 제정하였다. 즉,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부착한 경찰은 근무시 반드시 카메라를 켜 놓아야 한다.

단 비밀 정보원을 만나 대화하거나 피해자 혹은 증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꺼놓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근무이외에 경찰관의 실수로 인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끄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관들의 개인적인 대화 내용 뿐 아니라 시민들의 사적인 대화도 촬영되기 때문에 차후 사생활 침

23)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43619(2016. 6. 13 검색).

24)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75142(2016. 3. 10 검색).

25) 허태준, 볼티모어 시 경찰 바디 캠 전격 지급, 워싱턴 중앙일보, 2016. 3. 1 참조.

해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이로 인한 소송 제기도 가능할 수 있기에 근무이외에는 반드시 꺼놓을 필요가 있다.

또한 집안으로 진입할 때 카메라가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바디 캠 동영상은 촬영 후 9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²⁶⁾

2. 호주(시드니)

호주의 NSW(New South Wales Police Force alc Queensland Police Service) 주 경찰청은 경찰활동 장비로 신체부착용 영상녹화기(Body Worn Video - 이하, BWV)를 도입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합법적으로 BWV를 이용하여 공공장소 또는 개인적인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호주의 웨어러블 카메라인 BWV란 경찰의 업무집행용 장비로써 범죄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된다. 경찰활동의 일환인 직무집행시, 일반 시민과의 대화 혹은 범죄사건의 내용을 녹화할 수 있다.

아래 <그림 2-3>의 BWV 카메라는 고화질 광각 영상과 고음질의 오디오를 부착하여 녹화/녹음할 수 있으며, 녹화된 모든 영상은 보안영상 관리 시스템을 통해 보관 및 관리되며 제한된 상황에서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⁷⁾

26)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28323(2016. 3. 10 검색).

27)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Introduction(2016. 9. 12 검색).

〈그림 2-3〉 호주의 신체 부착 카메라(BWV-Body Worn Video)²⁸⁾

호주의 NSWPF(New South Wales Police Force) 주 경찰청은 웨어러블 카메라(Body Worn Video)를 시범 활용하고자, 2015. 9. 17부터 산하 76개 경찰서 중 Eastern Beach LAC(Local Area Command) 지역경찰 등을 대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Body Worn Video)을 시범운영하였다. 이는 2014. 5 신체 부착 카메라 도입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동안 약 400만 달러(한화 약 35억원)를 투입하여 NSWPF(New South Wales Police Force)의 일선 경찰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우선 Eastern Beach LAC(Local Area Command)에 1차로 267대의 카메라, 저장장치 및 검색, 인증시스템을 보급할 예정이

28)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Introduction(2016. 9. 12 검색).

고,²⁹⁾ 또한 Kings Cross LAC(Local Area Command), Botany Bay LAC(Local Area Command), 교통경찰대(Police Transport Command) 및 기동대(PORS) 등에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³⁰⁾

이처럼 호주는 웨어러블 폴리스캠(Body Worn Video)의 시범운영을 통해 경찰관과 관련자의 안전을 개선하고 향후 사법절차에 필요한 증거 확보 및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확보를 위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 및 불필요한 저항을 억제하고 경찰관의 적법하고 정확한 초동조치를 유도하여 범죄 현장의 증거확보 등 다양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 및 상대방의 불필요한 폭력, 긴장 억제로 상호 부상 방지, 경찰관의 초동조치 부실, 시민들의 공무방해 행위의 논란에 따른 입증 자료 확보, 범죄 수사 활용 및 법원의 재판에서 증거의 보강 자료, 경찰관 및 상대방의 대응 행태를 분석하여 경찰관 교육훈련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BWV)을 통해 촬영된 녹화물을 감시장치법(Surveillance Devices Act 2007)에 명시된 규정에 근거하여 영상 녹화물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웨어러블 폴리스캠(BWV)으로 촬영된 영상 녹화물을 불법적으로 사용, 전달, 유포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³¹⁾.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이 폴리스캠(BWV)을 이용하여 촬영되는 것을 꺼려하는 등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NSW 주(州) 경찰청은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는 관련

29) NSW 주정부는 NSWPF에 이어 철도 승무원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Body Worn Video)를 도입하여 객차 내 소란 및 난동을 억제할 계획이다.

30) QLDPS Ian Stewart 청장은 촬영정보 저장 등 경찰관들의 추가 근무와 불특정 다수의 초상권을 이유로 소극적이나, QLDPS 노조는 개인이 사비로 구매해온 것을 NSWPF처럼 정부에서 도입한다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31) 이와 관련된 법률은 State Records Act 1988,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1988, Government Information (Public Access) Act 2009 이다.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Research\(2016. 9. 12 검색\)](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Research(2016.9.12%20검색)).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를 의무적으로 철저히 하여 합법적인 영상촬영 절차에 의해 치안 유지 활동 및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³²⁾

3. 영국(런던)

영국은 전 세계적으로 CCTV가 가장 널리 보급된 것으로 유명하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CCTV의 장점과 더불어 빛과 그림자처럼 따라 붙는 것이 사실이다. 영국에서 조사된 바에 따르면 영국인들은 CCTV가 책임감을 가지고 효과적인 세이프가드 하에서 활용된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 대중의 신뢰와 그 사용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며 CCTV의 사용이 감시 사회의 한 부분으로 의문시 되도록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³³⁾

‘감시’라는 것은 범죄 예방과 범죄 조사 및 범인 검거를 위한 공공의 안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심각한 사생활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영국은 여러가지 법으로써 ‘감시’의 의미를 정의 하고 개인 정보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시가 꼭 필요한 경우와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³⁴⁾

32)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Introduction(2016. 9. 12 검색).

33)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2>(2016. 10. 23 검색).

34) 영국에서는 기관이 보유한 어떠한 정보라도 ‘데이터 정보 보호법령(Data Protection Act)’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이 법은 CCTV의 영상 자료까지 확대됐으며 특정 기관이 임의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반대하고 개인에게 본인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좀 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2012에 만들어진 ‘자유 보호 법령(Protection of Freedoms Act)’은 감시 카메라 시스템 사용 규약 및 감시 카메라 위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규제들을 재정비하게 했다. 그 결과 영국 정부는 범죄와 테러 예방을 위한 감시 카메라의 사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감시 카메라 운영과 그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사용해야한다는 기본 지침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된 ‘감시 카메라 사용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을 2013년 발표하게 됐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2> (2016. 10. 23 검색).

요즘은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심지어 헬리캠과 같은 이동형 무인 카메라 사용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생활 침해 우려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³⁵⁾

이러한 우려에 따라 영국 정부는 2014년 10월에는 ‘감시카메라 및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 보호 규정집(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을 공개했는데 여기에서는 CCTV 이외에도 웨어러블 폴리스캠, 드론, 헬리캠, 자동차 번호판 인식 시스템 등 새롭게 발전된 기술을 이용한 감시활동과 관련된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침해 방지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³⁶⁾

위와 같은 법률 제정과 더불어 영국은 경찰관의 외근업무 활동시 사건의 증거수집 및 범인검거, 교통단속 등 외근업무와 경찰행동 억제력을 위해 어깨에 장착하여 사용하는 소형카메라를 보급하여 활용하고 있다.

특히, 영국은 테이저사(Taser)에서 제작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

35) 2013년 영국의 감시 카메라 사용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은 다음과 같다. 1. 감시용 카메라 시스템은 법이 허락하는 목적과 필요에 맞춰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돼야 한다. 2. 카메라 시스템의 사용은 개인과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카메라 사용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한다. 3. 가능한 한 카메라 사용은 항상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며 문제가 있을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연락처가 카메라에 부착돼야 한다. 4.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과 정보의 보유 및 사용과 관련해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 5.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분명한 규칙, 정책 및 과정이 점검돼야 하며 규칙에 따라야 하는 모든 관계자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6. 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촬영된 이미지와 정보는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으며 촬영된 정보는 삭제시켜야 한다. 7. 저장된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돼야 하며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목적에 관련된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영상정보 공개는 규칙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거나 법집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8. 감시카메라 시스템 운영자들은 승인 받은 관리기준, 기술 기준, 능숙도 기준을 항상 고려해야 하며 시스템 사용 목적과 업무도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9. 감시카메라의 영상정보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 법적 요구사항, 정책 및 기준이 실제적으로 카메라 운영과 사용에 잘 반영됐는지 효과적인 검토와 감사가 있어야 하며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11. 정당한 목적이나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공의 안전과 법집행 기관의 증거적 가치로서 이미지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2. 매칭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가장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36)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2>(2016. 10. 23 검색).

하고 있으며, 이 회사에서 1년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폴리스캠 사용으로 경찰 폭력에 대한 불만이 87.5%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림 2-4> 영국의 신체 부착 카메라(Body Worn Video)³⁷⁾



이처럼 영국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수많은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경찰들을 도울 뿐만 아니라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2016. 10. 17 영국은 수도 런던의 경찰청은 일선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7년 중반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2만2천명 이상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body-worn video)을 지급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³⁸⁾ 또한 경찰 이외 소방관들을 포함한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현장 인력들에게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지급한다고 하였다.

런던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험 운용 결과 피해자들을 위한 증거 수집을 신속하게 하고 특히 폭력 사건들에서 자신의 행동이 촬영된

37) 이 Body Worn Video의 크기는 84*66*20mm로 담배갑 크기 정도이며, 무게는 98g, 제조사는 Taser로 130°의 광각, 1룩스(빛의 강도를 나타내며, 1룩스는 1미터의 거리에서 표준 크기의 촛불 1개가 내는 밝기를 말함) 이하 촬영이 가능하다.

38) <http://arstechnica.co.uk/tech-policy/2016/10/body-cams-taser-london-police-rollout/> (2016. 10. 18 검색).

것을 안 가해자들로부터 범행 인정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을 시작한 이후 가능한 한 조속히 촬영 대상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폴리스 캠은 촬영이 시작되면 촬영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카메라 주변에 빨간 불이 켜진다.³⁹⁾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Cambridge University)이 2014년 연구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한 경찰들에 대한 불만의 제기 건수가 9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⁴⁰⁾

4. 프랑스(파리)

프랑스에서는 웨어러블 폴리스 캠을 단추구멍 카메라(Caméras à la boutonnière) 또는 보행카메라(Caméras Piétons)로 지칭하고 있다.⁴¹⁾

2013년 4월부터 전국 80개 치안강화구역(ZSP, Zones de Sécurité Prioritaire)을 중심으로 약 1년간 시험 운용한 결과 현장근무 경찰관들의 호평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즉, 경찰기관을 중심으로 하여 총 156대의 소형카메라를 외근 경찰관에게 부착하여 경찰의 공무집행 시 사용하고 있다. 차후 2018년까지 약 4,500여대의 소형카메라(Caméras à la boutonnière 또는 Caméras Piétons)를 추가 보급할 예정이다.

3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8759318>(2016. 10. 18 검색).

40)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sep/29/police-with-body-cameras-receive-93-fewer-complaints-study>(2016. 10. 18 검색).

41) 프랑스의 현재 바디 캠은 가로 7cm, 세로 13cm의 크기로 어깨걸이 또는 포켓꽂이식으로 스냅사진이 아닌 동영상촬영용이다. 32G의 저장용량에 내부배터리는 205시간, 외배터리 사용시 8시간이 사용가능하고, 바디 캠의 가격은 약 1천유로(한화 125만원)에서 595유로로 대량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한화를 74만원 정도 하고 있다. 특히 이 바디캠은 광각렌즈를 장착하여 주간, 야간 넓은 범위의 촬영이 가능하며 불심검문 등 공무집행시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며 주로 공무집행 과정의 몸싸움, 언쟁 등 사후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주로 사용되고 있다. 주프랑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프랑스 경찰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참고.

2015년 2월 기준, 프랑스 전국에 1천여대, 파리 경찰청에 549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운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생활안전국에 해당하는 공공안전국(Direction Centrale de la Sécurité Publique, DCSP)을 중심으로 사용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국경경찰국(Direction Centrale de la Police Aux Frontières, DCPAF)과 기동경찰(Direction Centrale des Compagnies Républicaines de Sécurité, CRS)에게도 보급할 예정이다.

<그림 2-5> 프랑스의 웨어러블 폴리스캠(Caméras à la boutonnière)



프랑스의 웨어러블 폴리스캠(Caméras à la boutonnière)은 위의 <그림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로 7cm, 세로 13cm의 크기로 어깨걸이 또는 포켓꽂이식으로 스냅사진이 아닌 동영상 촬영용이다. 저장용량은 32기가(Giga)이고, 내부배터리는 2.5시간 정도이며, 외부배터리를 사용할 시에는 8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폴리스캠 1대당 가격은 약 1천유로(한화 약 125만원)에서 595유로(한화 약 74만원) 정도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렌즈는 광각렌즈(wide-angle lens)⁴²⁾를 장착하여 주간·야간에 넓은 범위의 촬영이 가능하며, 불심검문 등 경찰관에 의한 공무집행 시 언제든지 사용가능하다. 특히, 경찰관들의 공무집행 시 발생하는 폭행 등의 몸싸움, 폭언, 욕설 등의 언쟁 등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주로 폴리스 캠이 사용된다.

2015년 기준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시험운영 중에 있으며, 2018년까지 도입 완료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 지침 및 규칙 등 법적인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으나, 차후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제정할 예정에 있다.⁴³⁾

5. 캐나다(벤쿠버)

2015년 2월 기준으로 캐나다의 경우 경찰기관에서 정식으로 웨어러블 폴리스 캠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웨어러블 폴리스 캠의 사용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캐나다 경찰에 의한 웨어러블 폴리스 캠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어 정식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2015. 2. 23 BC(British Columbia)주 의회 입법위원회에서는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결정을 하였다.

42) 광각렌즈는 와이드 렌즈라고도 한다. 광각렌즈는 같은 거리에서 촬영할 때 표준렌즈보다 더 넓은 범위를 찍을 수 있다. 곧, 같은 거리 안에서라면 24mm 광각렌즈일 경우는 50mm 표준보다 1배 정도가 더 넓게 찍히므로, 좁은 실내에서나 특수한 풍경사진, 회의장면 등 많은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쓰이게 된다. 또한 사물을 왜곡시켜 원근감을 과장시킨다. 따라서 좁은 장소를 넓게 보이게 하거나 광대한 풍경을 1장의 화면에 담으려 할 때 등에 사용된다. 또 렌즈 가까이 있는 것은 실제의 물체보다 더 크게 찍히고, 좀 떨어져 있는 것들은 실제보다 훨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작게 보이게 찍힌다. <http://terms.naver.com>(2016. 10. 5 검색).

43) 주프랑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프랑스 경찰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참고.

당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폴리스캠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부 경찰서도 있었다. 즉, 2014년 10월 밴쿠버 경찰(Vancouver Police Department)은 노숙자들의 불법 텐트 철거시 인권침해 및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에 대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현장 경찰관들에게 시중에서 판매중인 기성제품인 웨어러블 카메라(Go Pro Hero3+)를 시범적으로 착용케 한바는 있었다.

<그림 2-6> 캐나다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물론 2015년 2월 기준으로 캐나다에서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용 지침이나 제품 규격 등 관련 규정들은 제정되지 않았다.⁴⁴⁾

이후 캐나다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계 개선을 위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5만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7500만 달러의 비용을 확보하여 투입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6년 캐나다 토론토 시민들은 토론토 경찰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하는 설문조사에서 약 75%가 찬성하였다. 이후 토론토 경찰은 100명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44) 주밴쿠버총영사관, 웨어러블 폴리스캠 관련 캐나다 경찰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참고.

시범운영을 거친 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캐나다 앨버타주에 위치한 켈거리 경찰청은 2017년까지 일선에서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다.⁴⁵⁾

특히, 켈거리 경찰청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중요한 사용 원칙은 첫째, 범죄 증거의 수집 둘째, 경찰관의 투명성과 시민들의 신뢰회복, 셋째, 경찰관의 책임과 전문성 강화, 넷째, 근거 없는 부정부패나 직권남용으로 부터의 경찰관을 보호하기 위해 활용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원칙이다.

그리고 2016년 3월 켈거리 경찰청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1,100대를 배포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촬영된 당사자는 언제든지 경찰관에게 촬영을 확인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이 있으며, 이는 정보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Freedom of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 FOIP)⁴⁶⁾에 근거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다.⁴⁷⁾

45) <http://www.cbc.ca/news/technology/body-camera-police-forces-canada-1.3519530> (2016. 10. 5 검색).

46) 1995년 10월 제정된 「정보의 자유와 개인정보보호법」, RSA 2000의 자유는 장 F-25는 앨버타(Alberta) 지방의 모든 공공 기관에 적용되는 지방법이다. 보통 FOIP 법이라 한다. 이법의 취지는 1. 공공기관이 보유한 기록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리 2. 공공기관이 보유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접근의 권리 3.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의 보호 등 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Freedom_of_Information_and_Protection_of_Privacy_Act_\(Alberta\)](https://en.wikipedia.org/wiki/Freedom_of_Information_and_Protection_of_Privacy_Act_(Alberta))(2016. 10. 18 검색).

47) <https://www.calgary.ca/SitePages/cocis/default.aspx>(2016. 10. 18 검색).

6. 기타(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두바이)

일본은 「일본 경찰법」 제2조 범죄예방과 검거에 근거하여, 경비상황이나 재해 상황 시에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한 예로 2015년 2월 22일 도쿄 마라톤에서 사용하였다.

일본 경찰의 경우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계획 조차 없다고 한다. 또한 일본 시민들 역시 폴리스캠의 촬영 자체를 감시당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생각된다.

싱가포르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2015. 1. 30부터 총 36개를 우리의 지구대 개념에 해당하는 ABukit Merah West NPC(Neighbourhood Polce Centres)에 처음 도입하여 배치하였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범죄의 수사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하고 있고, 경찰관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예를 들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지침을 보면, 폴리스캠은 범죄의 수사나 증거 수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녹화된 장면은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31일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따른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⁴⁸⁾

이탈리아의 경우는 2014년부터 웨어러블 폴리스캠(Body Worn Camera)을 구매하고, 주요 도시의 현장부서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하였다. 주요 도시는 로마, 밀라노, 나폴리, 토리노시에 330대(기능별로 수사대 160대, 방범 등 170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48) 경찰청, 웨어러블카메라 관련 싱가포르 제도, 경찰청, 2015. 3, 경찰청 정보통신담당,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있고, 교통이나 방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공집회에서 시범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본격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경찰장비로 도입한 것은 아니고,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준이다.

즉, 이탈리아 개인정보보호법에 기한 내부 지침⁴⁹⁾과 개인정보보호법 제53조에 근거를 두고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카메라와 카메라 내장 메모리 카드는 일련번호로 관리되어야 하며, 반드시 특별 등록(일시, 사용 목적, 이용자명 등)을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관리를 해야 한다. 또한 위급한 시나리오가 예견되는 상황일 때에는 팀장의 지시에 의해 팀원들이 카메라를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카메라 사용을 중지, 재가동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또 카메라 촬영은 실제로 필요한 때, 예를 들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 또는 공공질서와 안전에 위협적인 경우에 촬영 할 수 있다. 물론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서면 신고증과 함께 반환하고, 카메라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책임자에게 전달, 책임자는 과학수사팀에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공공의 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고, 범죄의 예방, 탐지, 억제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긴급한 위험으로 판단하여 촬영하였으나, 실제로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촬영한 영상을 삭제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의 규정인 ‘수집되고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적절하고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수집 및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 이상 초과는 불가’하

49) 내무부장관 회보지침(Circular Letter No.555/OP/0 001940/2014/1 of 19 June 2014.

다는 것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수집된 정보는 정보가 수집되고 처리되는 목표에 필요한 기간 동안 내에만 국가기관이 보유하거나 저장해야 한다.⁵⁰⁾

이 외의 국가로 두바이(Dubai)에서는 치안유지,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휴대용 펜형 카메라 등을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근거 법률 규정이나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지 않으며, 사복 경찰관이 정보수집 등의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⁵¹⁾

50) 경찰청,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이탈리아 제도, 2015. 4, 경찰청 정보통신담당,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51) 경찰청,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두바이 실태, 2015. 3, 경찰청 정보통신담당, 경찰청 내부자료 참조.

제3장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 활용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분석

제1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실태

1.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앞서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추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최근 경찰 활동분야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우리나라 경찰도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 남용 등 위법 행위를 방지하고, 범죄수사 및 범죄의 증거를 보존하고,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경찰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은 2013년 치안부분 행정자치부 ‘U-서비스 지원사업’의 과제발굴 위원회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업 과제를 발굴하였고, 이후 2015년 과제로 ‘웨어러블(Wearable) 동영상 촬영 시스템’이 선정되면서 부터이다.

2015. 10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 시스템 운영규칙’이 훈령으로 제정되고, 2015. 11. 1 부터 시범 운영을 할 때는 다음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생활안전 기능 78대, 교통안전 22대)를 서울, 부산, 경기남부 및 북부, 충북, 충남, 경북, 경기남부, 광주, 제주지방경찰청으로 구분하여 예하 23개의 경찰서에 고루 배부하였다.

<표 3-1>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배부 현황⁵²⁾

(단위: 대)

생활안전(78대)						교통안전(22대)					
지방청	경찰서	수량	지방청	경찰서	수량	지방청	경찰서	수량	지방청	경찰서	수량
서울	구로	8	경기북부	구리	2	서울	노원	3	경기북부	파주	2
	강남	8		청주흥덕	2		서부	2		광주	북부
	송파	8		청주상당	1	부산	부산진	2	충북	경비교통	
				청주청원	1		사하	2	충남	천안서북	1
	영등포	21	충남	천안서북	1	강서	2	경북	구미	1	
	마포	25	경북	구미	1	경기남부	성남수정	2	제주	서부	2

그러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전국 단위의 소량으로 배치하여 시범운영 하다 보니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올바른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치안환경이 복잡한 곳으로 집중배치가 필요하게 되어 2016년 6월 재배치를 하였다. 즉, 100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하여 영등포경찰서 40대, 마포경찰서 40대, 강남경찰서 20대를 재배치하여 시범운영하고 있다.

<표 3-2> 웨어러블 폴리스캠 재배치 시범운영 배부 현황

(단위: 대)

구분	계	마포	영등포	강남
대수	100	40	40	20
배포기능		생활안전 (지역경찰)	생활안전 (지역경찰)	생활안전 (기동순찰대)

2015. 11. 1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은 다음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 2016. 7. 17. 기준으로 거의 1년간 총 24,670건의 입·출고가 있었다. 2015년의 경우에는 11월, 12월 2개월 동안 4,058건의 입·출고가 있었으며, 2016년 1

52)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배부 현황, 2016, 내부자료 참조.

월부터 10월까지의 입·출고가 있었다.

<표 3-3> 2015~2016 웨어러블 폴리스캠 월별 입출고 및 영상등록 현황⁵³⁾

(단위: 건)

구분(건)	총계	2015년		
		소계	11월	12월
입·출고	24,670	4,058	1,875	2,183
영상등록	530	151	42	109

구분(건)	2016년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17	
입·출고	20,612	2,035	1,549	2,577	2,459	2,352	2,072	1,733	2,136	2,320	1,379	
영상등록	379	11	20	5	6	38	8	6	14	86	185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영상을 서버에 등록한 건수는 1년간 총 530건으로 집계되었다.

영상등록 건수를 월별로 분석해 보면, 1년간의 영상등록 통계만으로 모든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처음 2개월은 영상등록이 어느 정도 되었지만, 2016년에 들어서서는 저조한 편이었다. 이는 경찰관들이 기기적인 결함, 본인의 모든 행동이 촬영된다는 불편함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폴리스캠 부착을 꺼려한 것 같다.

이후 6월에 회수를 거쳐, 7월에 재배부와 재교육 등이 이루어져 9-10월 되어서 영상등록이 많아진 것으로 추측된다.

53) 경찰청, 2015- 2016 웨어러블 폴리스캠 월별 입출고 및 영상등록 현황, 2016. 10, 내부 자료 참조.

2.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분석

경찰청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분석에 의하면, 일단 경찰관들에 의한 폴리스캠의 활용은 적극성이나 편리성, 사용에 의한 유익함이 크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존에 지역 경찰관들에게 지급된 스마트폰 카메라보다도 폴리스캠의 사용 방법이나 절차가 복잡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보안성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폴리스캠 사용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경찰관들이 촬영한 테스트 영상을 포함하여 모든 영상들을 등록하는 방식은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하는 등의 시간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증거활용이나 차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필요한 영상만 서버에 등록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영상자료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 과정이 객관적인 방법으로 녹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웨어러블 폴리스캠과 비교 할 수 있는 시중에 시판되는 신체 부착 카메라(액션캠 등)들과 비교하여 보안을 강조하다보니 불편사항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 폴리스캠에 대한 성능의 보장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기능적인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하여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행정자치부 U-서비스 기반 전자정부 지원 사업에 2016년 확산 예산을 신청하였지만, U-서비스 기반 지원 사업의 예산 축소로 인하여 확산사업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다 보니 폴리스캠 기기의 성능 저하는 경찰관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소극적으로 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지역경찰관들의 인터뷰에 의하면,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모두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다는 측면에서는 경찰관 본인의 모든 대화와 행위가 녹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특히, 폴리스캠 촬영에 따른 법적근거 미비와 시민들과의 다툼에 관해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다.

이에 대한 자세한 운영상 문제점은 다음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3.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상 장·단점

현재 우리 경찰은 2015년 11월부터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폴리스캠 활용에 따른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13. 7. 30 미국(美國) 법무부가 ‘웨어러블 폴리스캠(Body Worn Camera, BWC)’의 도입 사례에서 나타난 장점과 단점을 발표한 검토보고서를 인용하고자 한다.

본 검토보고서는 2013년의 미국의 리알토시 경찰·2013년의 메사시 경찰·2013년의 피닉스시 경찰과 2007년 영국의 플리머스시(市) 경찰·2011년 스코틀랜드 경찰 등 5개 경찰관서의 사례를 연구하였다.⁵⁴⁾

이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4) 同 보고서인 “경찰관 웨어러블 폴리스캠(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은 미국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아리조나주립대학교 ‘마이클 화이트’ 범죄학 교수가 작성하였다. White, M., 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4).

<표 3-4> 미국 법무부, 경찰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 도입에 따른 장·단점(2013. 7. 30)

연번	예상 장점·단점	검증 결과
1	경찰의 합법성에 대한 투명성 및 시민감시를 제고한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음
2	경찰과 시민 모두의 품행을 단정하게 만든다.	경찰의 물리력 사용 사례와 시민의 경찰대상 민원 제기가 감소 (단, 교양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음)
3	범죄수사·경찰감사 업무와 관련, 증거 확보(동영상 자료)에 유용하다.	경찰대상 민원 처리시 유용하였고, 허위 민원이 감소하였음. 경찰의 서류작업 부담을 줄여 주고 기소범죄의 유죄율을 높였음
4	경찰관 훈련에 유용하다.	활용사례는 있으나, 효과는 미(未)검증
5	시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문제점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이나 사생활침해 외 피해자 등의 정신적 충격 등 심도 있는 논의 필요
6	경찰관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	뉴욕시경 노조는 근로 환경의 큰 변화라며 우려 표명 / 일부 관서는 관련 내규를 작성, 우려를 경감
7	경찰관의 건강·안전을 위협한다.	목에 걸거나 머리에 부착하는 BWC는 무게·충격으로 인한 부상이 있으나 ⁵⁵⁾ 옷깃 부착형은 그러한 사례가 없었음
8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용시 추가 훈련과 방침이 필요하다.	언제 촬영을 시작·종료할지, 촬영사실을 고지할지 등에 대한 방침을 제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훈련 필수 ※ 현장 재량을 많이 부여하는 쪽이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도 있음
9	예산·물류지원 등 상당한 자원이 소요 된다.	카메라비용(대당 \$800~1,000), 보관·관리용 시설(특히, 동영상 보관용 보안서버)과 인력 등 필요

55)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한 부상 사례에 있어서 경찰 제복에 부착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부상한 사례는 없어 안전하나, 안경부착형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부상당한 사례가 있다.

제2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상 문제점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운영상 문제점은 경찰청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된 문제점과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시범운영중인 경찰서 지구대 현장 경찰관들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을 같이 서술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를 위해 심층 인터뷰한 경찰관서는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여의도 지구대, 마포경찰서 홍익지구대, 서강지구대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착용 현장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뷰하였음을 밝힌다.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상 문제점

가. 웨어러블 폴리스캠 부착의 불완전성

현재 우리 경찰이 시범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의 외근조끼에 클립 형식의 부착 고리로 장착하게 되어있다. 그러다보니 경찰관이 움직일 때 마다 폴리스캠의 촬영 각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부착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폭력이나 폭행 등 중요한 범죄의 현장을 촬영해서 영상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른 영상이 촬영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경찰관의 신체에 불완전하게 고착되어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처음 초창기부터 발생하여 현장 경찰관이 의견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 시 찍고 싶은 방향의 영상 확보가 곤란’ 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다보니 외근조끼에 스마트 폰이 부착된 주머니를 통해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외근조끼에 있는 스마트 폰 주머니는 비닐주머니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기에 경찰관이 촬영하고자 하는 각도가 고정되어 원하는 방향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경찰관의 인터뷰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는 스마트 폰의 부착주머니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고정시킬 수 있는 전용 부착장치를 외근조끼에 장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경찰청에서도 이 부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책을 고민하고 있다.

나. 장시간 소요로 인한 중요한 촬영 영상만 업로드 필요

현장 경찰관의 인터뷰에 의하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하는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촬영된 영상을 업로드(upload)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보통 평균적으로 1분 영상을 업로드 하는데 22초가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 근무자들에 의하면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이다.

이는 경찰의 보안상 영상의 외부유출의 방지 등을 위해 암호화를 하는 등 일반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액션캠 등 바디 카메라들의 자료이동 시간보다는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현장 경찰관들은 업로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근무 후, 업로드를 하려고하면 근무교대 시간 등으로 다른 팀에게 웨어러블 폴리스캠 장비를 인계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결국 업로드는 다음 근무시간으로 미루어서 시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다 보니 업로드 할 영상도 쌓여가고,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다보니 이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고충을 각 지구대마다 유사하게 제기하고 있다.

물론 경찰청은 영상을 전송할 시에 암호화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으로 시간을 단축하고자 기술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현행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상 녹화를 마친 모든 영상기록들은 지체없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전송 즉, 업로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현장 경찰관들은 촬영된 모든 영상을 업로드 하고 있지만, 장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현장 경찰관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에 대하여 불편해 하거나 꺼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필요한 영상만 업로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더불어 관련된 규정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배터리 용량의 부족

현재 시범적으로 지급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배터리 사용 시간은 2시간 정도 촬영 녹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물론 2시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어서 5400mA 용량의 보조배터리를 추가로 지급하여 8시간 동안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촬영 녹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실제 현장 경찰관의 인터뷰에 의하면, 2시간은 고사하고 30분도 안되어 방전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2시간이 녹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결국 중요한 범죄 현장이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촬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보조배터리도 지급되었지만, 보관만 할 뿐 거의 사용하는 경찰관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결국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을 꺼리고, 스마트

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라 배터리의 용량은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보여 진다. 물론 여기에는 비용이 들기에 예산 확보 문제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 영상의 확인 불가

현장 경찰관들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녹화와 중지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경찰관이 임의적으로 편집을 하거나 조작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자 함이다.

앞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신체 부착이 불완전하여 제대로 촬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등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과 음성이 올바르게 제대로 녹화 되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분실하거나 또 다른 이유로 피탈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영상을 확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침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 경찰관의 확인이 불가하도록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하였다.

물론 보안상의 기술적인 조치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관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는 것은 차후에 소송 등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 방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에 충분히 제대로 촬영이 되었는지 영상기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시범운영이 끝나고 활성화 차원에서도 경찰관 본인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2.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에 따른 제도상 문제

가. 헌법상 사생활 침해 문제(프라이버시권)

현대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 사생활의 비밀보장이 요구되고 있다.⁵⁶⁾

이를 위해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프라이버시(Privacy)의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권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 개인이 자신의 사생활의 불가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양심영역이나 성적 영역과 같은 내밀한 영역에 대한 보호, 인격적인 감정세계의 존중의 권리와 정신적인 내면생활이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등이다.⁵⁷⁾

특히, 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권(Privacy)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이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56)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는 1890년의 Warren-Brandeis의 논문 이래로 독립된 권리로 인정되었는데, 미국에서는 판례법상 인정되게 되었다. 독일에서는 일반적 인격권 속에 프라이버시(Privacy)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이 권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서 주장되고 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金哲洙, 「憲法學新論(第)20全訂新版」, 博英社, 2010, 666면.

57) 헌재 2003. 10. 30. 선고, 2002 헌마 518, 헌재판례집 제15권 2집(하), 185면 이하(206-207면); 헌재 2008. 4. 24. 선고, 2006 헌마 402·531(병합), 헌재판례집 제20권 1집(상), 674면 이하(680면).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된다. 그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⁵⁸⁾

이처럼 현재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⁵⁹⁾

특히, 자기가 원하지 않는 정보의 축적금지, Data Base에 대한 정보의 관리, 자기기록에 관한 수정권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컴퓨터, CCTV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기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에 따른 헌법상 프라이버시권 즉, 사생활 침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다.

우리 헌법은 사생활의 비밀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질서유지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촬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⁶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58) 헌재 2005. 5. 26. 선고, 99 헌마, 513, 2004 헌마 190(병합), 헌재판례집 제17권 1집, 668면 이하).

59) 헌재 2005. 7. 21. 2003 헌마 282, 헌재판례집 17-2, 81, 90; 헌재 2008. 10. 30. 선고, 2006 헌마 1401·1409(병합), 헌재판례집 제20권 2집(상), 1089면 이하 참조.

60) 대판 1996. 8. 20, 94 다 29928, 공보 1996, 2776 이하; 대판 1998. 7. 24, 96 다 42789 판례 참조.

위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인정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현재 경찰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 근거하여 촬영을 하고 있지만, 법률적인 근거 없이 촬영대상자의 단순 동의에 의해서만 촬영을 한다면, 차후 경찰의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하여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국가배상청구, 청원, 공무원에 대한 징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법적인 근거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나. 형사법상 적법절차의 문제

현행 형사소송법상 수사목적의 사진 촬영 및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 영상기록에 대한 법률적 촬영 근거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 따르면 폴리스캠의 사용은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등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 및 증거보존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때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⁶¹⁾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자유도 국가권력의 행사로부터 무제한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 것이고,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

61)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시행 2015. 10. 19.), 제6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 범위 참조.

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⁶²⁾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두고 있으므로 활용에 대한 내부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앞서서도 설명하였듯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이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차후 적법한 절차 문제와 외부적인 법적 근거 제시에는 법률적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촬영 방법에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한 경우'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용의자의 주거지 외부에서 담장 밖 및 2층 계단을 통하여 용의자의 집에 출입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행위에 대해 그 촬영 방법이 반드시 상당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⁶³⁾

판례의 입장은 소위 육안 관찰의 법리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⁶⁴⁾ 육안 관찰의 법리란 공공장소에서 특별한 기술적 장치의 도움 없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은 영장 없이 촬영할 수 있다는 견해를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은 육안관찰 법리의 연장선상에서 위 판례에 근거하면 촬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2) 대법원 99도 2317. 영남위원회 사건 참조.

63) 대법원 99도 2317.

64)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5, 1332면.

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물의 증거 능력 문제

현재까지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물이 법원의 증거로 제시된 적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는 아직까지는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차후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위해 이와 유사한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문제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증거라면 전문증거와 비전문증거 모두 무결성 및 동일성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디스크의 등의 저장매체를 압수한 다음 피의자 등의 서명을 받아 봉인하여야 한다. 이때 서명 봉인 과정을 녹화하며, 압수 대상자가 입회한 가운데 봉인을 풀고, 통합 포렌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압수한 저장매체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한 후 별도의 저장장치에 이미지 파일을 저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이용하여 복구 등의 분석 작업을 실시하며, 압수한 저장매체에 쓰기 방지장치를 연결한 상태에서 이미지 파일 생성 작업을 실시하고, 이미지 파일에 대한 해쉬값을 계산하여 피의자로 하여금 해쉬값이 기재된 서면에 서명, 날인하게 한다. 이때 피의자 등이 법정에서 무결성을 부정하는 경우, 압수한 저장장치의 해쉬값과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을 비교하도록 법원에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⁶⁵⁾

위의 디지털 증거의 절차에 따르면,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 영상물의 증거능력 문제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 전송된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기록 증거물(CD, DVD 등) 2개를 제작하고 영상기록 증거물 표면에 사건번호, 죄명, 진술자의 성명

65)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 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형사판례연구(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 516-517면.

등 사건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후, 경찰관은 위의 영상기록 증거물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조사받는 사람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그러나 경찰관은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 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직접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그러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기록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영상기록 증거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기록 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기록 증거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영상기록 증거물을 봉인하기 전에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영상기록의 시청을 요구하는 때에는 영상기록 증거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진술자 또는 변호인이 녹화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기록은 앞서 설명한 디지털 증거처럼 법정으로 제출 하는 과정에 반드시 무결성과 동일성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⁶⁶⁾

66)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쉬(Hash) 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

즉, 동일성이란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이 법원에 제출되었을 경우, 원본과 동일한 것인지를 보는 것이고, 무결성이란 촬영된 영상이 변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라. 강력(살인)사건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 기록 보존 문제

2015. 10 경찰청 훈령으로 제정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제12조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3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15. 7. 24.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⁶⁷⁾

즉, 형사소송법은 살인죄를 저질러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 현행 25년으로 돼 있는 공소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법안은 사형

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쉬 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반드시 압수·수색 과정을 촬영한 영상녹화물 재생 등의 방법으로만 증명하여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0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67)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5월 대구에서 발생한 김태완(당시 6세) 군 황산 테러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태완 군은 49일간 투병하다 결국 사망했으며, 태완 군에게 황산 테러를 가한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 시효 만료가 임박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살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고, 2015년 3월 법 개정안이 발의(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돼 추진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15년 7월 10일 대법원이 태완 군의 부모가 낸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사건의 공소 시효가 만료됐다. 따라서 태완이법은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만 해당되므로, 공소 시효가 만료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경우 이 법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 시효를 폐지하고 아직 공소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적용토록 했다. 다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강간치사, 폭행치사, 상해치사 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아 개정 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현행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는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은 제외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이 살인 사건과 관련이 된 영상이라면 실체적인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상은 무기한으로 보존되어야 할 것이다.⁶⁸⁾

따라서 살인사건과 같은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아니한 범죄들을 위해서는 현행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과 관련된 법률 제정 시에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 영상 보존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현행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의하면, 경찰청 영상정보데이터베이스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통하여 수집된 촬영 영상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30일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신중을 기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68)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2014, pp15-16.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 수집된 영상 기록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하여 촬영 수집된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데이터 저장 능력 및 비용 등의 다른 요인과 함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현행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보다는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행 이후에는 반드시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서 촬영된 영상은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저장된 영상의 무결성과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침해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준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에 유사하게 있는 내용이다.

첫째, 데이터 변조, 편집, 복사를 금지를 명시 하여야 한다. 둘째, 경찰관이 수집된 영상에 대하여 서버로 전송하기 전 변경하거나 녹음을 삭제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정보감사시스템을 통하여 촬영 영상 데이터에 접근하여 열람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넷째, 신뢰할 수 있는 백업시스템도 마련되어야 하고, 백업시스템에는 영상기록 뿐만 아니라 로그 기록도 함께 저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 하는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⁶⁹⁾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영상에 기록된 사람들의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증거를 보존하는데 있어 촬영된 영상 데이터 조작의혹 등의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⁷⁰⁾

69)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2014, pp15-16.

보존기간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일반적으로 증거 또는 비증거로 분류하여, 보존기간을 다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증거영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영상으로는 범죄, 체포과정에서의 경찰관과의 대치 등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한다. 특히, 살인 사건과 관련된 영상에 대해서는 무기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미한 범죄의 경우 몇 달간 보존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⁷¹⁾

70)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2014, pp15-16.

71)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2014, pp15-16.

제4장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효과와 실효적 개선 방안

제1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활용 효과

1.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 경찰 활동의 책임과 투명성 확보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국내보다 조금 빠르게 도입한 선진국들은 추상적으로나마 경찰 활동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투명성과 관련한 미국 뉴욕 법원의 최근 판례로 ‘뉴욕 경찰국은 동작정지, 질문, 몸수색 등 불심검문에 대하여 ‘폴리스캠’은 객관적인 기록을 제공해 주고 있고, 경찰관의 과잉 진압 및 행동을 관찰 할 수 있고, 또한 인종적인 편견 때문에 경찰관에게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일부 시민들의 생각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통한 기록은 경찰관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사범 처리, 몸수색, 동작정지 등 경찰관의 공무집행 활동이 시민들에게 공권력의 남용이 과도하고 부당하다는 불신을 해소해 줄 수 있는 투명성을 갖는다’고 판결하고 있다.⁷²⁾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2016년에 들어와서야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72) Floyd v. City of New York 2013, pp. 26-27.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나 부작용 등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을 통한 민원 및 범죄억제에 관한 연구를 위한 다양한 데이터 분석과 함께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⁷³⁾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효과성 측정은 주로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인터뷰 등의 조사를 한 것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함에 있어 나타나는 효과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리 경찰의 경우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정확히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활용한 효과가 구체적으로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우리의 경우 본 연구를 함에 있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일선 지역 경찰관(영등포경찰서 지구대 2곳, 마포경찰서 지구대 2곳)을 상대로 하여 심층적인 인터뷰를 한 것이 아마도 최초인 것 같다.

일선 경찰서 및 지구대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대다수의 경찰관들은 폴리스캠 미착용시보다는 착용시에 더욱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은 책임있는 경찰의 직무수행의 확보와 이러한 직무수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경찰과 일반 시민들, 범죄자들과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상황 등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과 충돌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73) 영국의 폴리머스의 헤드 카메라 프로젝트 운영 후 분석에 따르면, 폴리머스 시의 강력범죄는 헤드 부착 카메라 도입 후 1.2% 감소하였고, 상해사건도 1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 현,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치안정책 연구 제28권 제23호, 2014, 36면.

웨어러블 폴리스캠 착용 경찰관의 인터뷰에 의하면, 경찰관이 신체에 부착하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관 본인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심리적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즉, 경찰관의 순찰 및 범죄현장으로 출동시에 본인의 말과 행동이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기에 항상 책임성을 갖고 언행에 주의를 갖게 된다고 한다.

또한 경찰관들이 시민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무력 사용에 있어서도 최대한 자제하게 된다고 한다.⁷⁴⁾ 다시 말해, 카메라를 부착하지 않은 경찰관은 신체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쉽게 경찰력 사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는 경찰관은 신체적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경찰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⁷⁵⁾

2. 경찰관의 공권력 남용 방지와 정당성 확보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⁷⁶⁾ 최근 경찰이 ‘갑질 횡포’를 근절하겠다고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들어갔으나, 정작 경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어 공권력을 남용하

74) 리알토 경찰국에서의 부착 카메라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카메라를 부착한 순찰조와 부착하지 않은 순찰조를 비교한 결과, 부착조가 부착하지 않은 조보다 60% 정도 적게 무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Recommendations and Lessons Learned(Washington, DC, 2014), p. 2; 남궁 현,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3호, 2014, 36면, 재인용.

75) Farrar, T., Self-awareness to Being Watched and Socially-desirable Behavior: A Field Experiment on the Effect of Body-worn Cameras on Police Use-of-force(Washington, DC: Police Foundation, 2013), p. 5; 남궁 현, 위의 글, 36면, 재인용. 애리조나 주의 메사 경찰국(Mesa Police Department)에서 폴리스캠을 사용한 50명의 경찰관(실험군)과 그렇지 않은 50명의 경찰관(비교군)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실험군의 경찰관이 75% 적게 경찰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6) 박남춘, 경찰 갑질? 공무집행 방해 구속 2년간 3,054명 구속영장 기각된 사람도 1,500명 넘어, 2016. 9. 21,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참조.

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근거로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과 2015년 2년간 공무집행방해죄로 검거된 사람은 29,698명, 구속된 사람은 3,05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2년간, 검거자가 27,796명, 구속자가 1,302명인 것에 비해 검거인원은 7%, 구속인원은 2.3배 증가한 수치다.⁷⁷⁾

특히, 구속인원은 2012년 729명, 2013년 573명에서 2014년에 들어서 전년도에 비하여 3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2015년에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1> 2012~2015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법처리 현황

(단위: 명)

구 분	검거인원	구 속	불구속
2012년	14,389	729	13,660
2013년	13,407	573	12,834
2014년	15,142	1,617	13,525
2015년	14,556	1,437	13,119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인원도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각인원은 2012년 274명, 2013년 186명에서 2014년 826명, 2015년 703명으로 최근 2년간 1,500명이 넘었다. 특히, 2012년, 2013년 2년간 영장이 기각된 사람이 460명인 것을 감안하면, 기각인원 역시 2년간 3.2배 폭증한 것이다.

77) 박남춘, 위의 보도자료 참조.

<표 4-2> 2012~2015 공무집행 방해 관련 사법처리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공무집행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 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 처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처사
2012년	구속영장 신청인원	1,003	765	57	94	87	-
	기각인원	274	226	8	14	26	-
2013년	구속영장 신청인원	759	589	34	61	74	1
	기각인원	186	156	9	10	11	-
2014년	구속영장 신청인원	2,443	2,154	58	142	89	-
	기각인원	826	784	4	24	14	-
2015년	구속영장 신청인원	2,140	1,780	49	181	130	-
	기각인원	703	649	9	17	28	-

이에 대하여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구속영장 기각률이 높은 경우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으로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 소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경찰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남발로 경찰이 공권력 남용으로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의 피해자는 경찰관들이다.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신청이 증가하였다는 통계만을 갖고 공권력이 남용되었다고 보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물론 많은 사법처리 사례 중에는 경찰의 공권력이 남용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죄의 대상이 되는 경찰관은 대부분이 목격자가 동

료 경찰관이고 또한 조사를 하는 경찰관도 동료로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자의적으로 남용될 소지가 충분하다.

또한 경찰의 정당한 법집행이 구속 신청이 많고, 기각률이 높다는 이유로 인권침해와 공권력 남용되었다 라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고 본다.

이처럼 경찰에 의한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과잉대응이나 위법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신중한 공권력의 행사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

경찰에 의해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시행된다면 위와 같은 통계에 의한 오해도 해결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따른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다.

결국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고, 더불어 경찰관도 보호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사용에 따른 불법행위자의 태도 변화

경찰관에 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은 정당하고 투명한 공무집행을 통해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이다.

현재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하였을 때 주취자 등의 폭언, 폭행행위 등을 행사하는 불법행위자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보고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한 경찰관의 인터뷰에 의하면, 주취자들의 폭언행위 또는 인식이 있는 불법행위자들은 행위에 있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촬영한다고 고지한 후에는 보통의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인 태도가 변화 등이 있다고 한다.

특히, 평소에는 과격한 태도를 보이는 사례들이 실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촬영됨을 고지한 후에는 말이나 행동 뿐 만 아니라 대부분은 과격한 불법행위는 감소되었다는 것이 현장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견해이다.

불법행위자들은 본인의 행동이 촬영된다는 심리적인 압박이 충분히 작용하는 것 같다.

영국의 경우 한 경찰국(Renfrewshire/Aberdeen)에서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의 비교군에서는 62건의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으나, 폴리스캠을 착용한 실험군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1건 밖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⁷⁸⁾

이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한 실험군은 불법행위자들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이 강하게 작용하여 그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있다고 보여 진다.

4. 민·형사 소송 제기 시 촬영 영상의 활용

경찰관에 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또 다른 활용 효과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차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찰관과 시민간의 대면접촉은 사적 공간이나 야간 등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일한 상황에 대해 경찰관과 시민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 객관적 제3자의 증언이나 CCTV, 녹음기 같은 직·간접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 실체적 진실을 찾는다는

78) White, M., 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Washington, DC :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4), p. 12; 남궁 현, 앞의 글, 37면, 재인용.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경찰관이 범죄를 직접 목격하더라도 범인이나 용의자가 강력히 부인할 경우 그 범죄 혐의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빈번하다.⁷⁹⁾

또한 경찰관이 공무집행 중에 피해를 입은 시민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적법한 공무집행과 불법한 공무집행을 입증함에 있어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영상은 소송에 있어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이처럼 경찰관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당사자나 증인으로서 입장이 되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이용한 촬영 영상은 경찰관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다.

미국은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 이전에도 90%가 넘는 검사들이 법정에서 영상 자료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적이 있을 정도로 비디오 영상자료는 형사 사건에 큰 역할을 해 왔다.⁸⁰⁾ 영상자료는 사건준비 시간을 단축하고, 논점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⁸¹⁾

현재 우리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

79) 남궁 현, 앞의 글, 37-38면.

80) 이와 관련된 미국 사례로, 과속 자동차를 추격하는 장면을 순찰차의 카메라(일명 dashcam)로 촬영한 영상이 미국 연방 법원의 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다(Scott v. Harris). 이 사건은 2001년 경찰관인 티모시 스캇(Timothy Scott)은 빅터 해리스(Victor Harris, 당시 19세)와 자동차 추격전을 벌였다. 고속으로 진행되던 추격 끝에 경찰관은 해리스가 운행하던 차량을 가격하여 도로 밖으로 밀어 냈고, 이 사고로 해리스는 사지가 불구되었다. 당시 경찰의 추적이 공권력의 남용이었다는 주장을 다투던 미 연방 대법원에서 당시 스캇 경찰관이 운행하던 순찰차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비디오 영상이 예외적으로 상영되었다. 많은 학자들은 대법관들이 이 영상을 시청한 후 경찰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논란과 관련한 내용은 Kahan, D. M., Hoffmann, D. A., & Braman, D., "Whose Eyes Are You Going to Believe? Scott v. Harris And The Perils of Cognitive Illiberalism", Harvard Law Review, Vol. 122(2009), pp. 837-906. 남궁 현, 앞의 글, 39면, 재인용.

81)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 Primer on Body-Worn Cameras for Law Enforcement (Washington, DC, 2014), p. 3; 남궁 현, 앞의 글, 39면, 재인용.

문에 아직까지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증거로서 사용된 적은 없다.

그러나 차후에는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수사기관의 수사 뿐만 아니라 민·형사소송의 법정에서도 중요한 증거 자료로서 활용될 것이다.⁸²⁾

5. 경찰관 법집행에 따른 무력 사용 감소 여부

현재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하는 경찰관들의 심층 인터뷰에 의하면,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법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무력 사용이 감소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앞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학 마이클 화이트 교수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경찰의 법집행에 따른 물리력 사용 감소와 시민들이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민원 제기가 감소하였다고 한다.⁸³⁾

우리는 영미 국가처럼 물리력 사용이 적극적이지 않은 탓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으로 인한 무력 사용의 증가나 감소하는 것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차후 이에 대한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82) 법원은 수사기관의 카메라 사용과 관련해서는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재구성했을 가능성이 보인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영상에 관한 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 서울고법 1987. 2. 10. 선고 86노3515 제2형사부 판결 참조.

83) White, M., 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4).

제2절 경찰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에 따른 개선 방안

1.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자료의 보관 및 관리 개선

2015년 10월 경찰청 훈령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이 운영 중에 있는데, 동 규칙 제12조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한 영상기록을 30일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자동으로 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기록들이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고, 차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범죄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 피의자, 경찰관 모두에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기록을 30일간만 보관하도록 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사법시스템으로 보아서도 30일안에 범죄 사건들이 종결되는 경우가 흔치 않을 뿐더러 영상기록은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중 중요한 증거가 되기에 장기간 보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CD나 DVD 등을 이용하여 증거보전을 위하여 중요한 자료를 보관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상기록을 30일간 보관할 수 있는 규정도 중요한 범죄의 자료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이 된다면, 30일 이상으로 충분한 여유 시간동안 영상기록을 보관 할 수 있도록 동 운영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의 보존기간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보통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일반적으로 증거 또는 비증거로 분류하여, 보존기간을 다르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한 증거영상으로 보존되어야 하는 영상으로는 범죄, 체포과정에서의 경찰관과의 대치 등으로 법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특정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특히, 살인 사건과 관련된 웨어러블 폴리스캠 촬영 영상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⁸⁴⁾

현재 우리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은 미국시민자유연맹 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 제시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Police Body worn-cam) 운영을 위한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의해 촬영된 영상 데이터의 저장 및 방법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촬영된 영상의 보존정책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보존기간을 30일로 정하고 있는 우리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과는 다르게 저장된 영상의 보존기간이 다르다.

특정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영상기록물은 미국의 경우에서도 각 주(州)별로 보존기간에 차이가 있다. 노스타코타 주(州)⁸⁵⁾는 14일, 뉴올리언스 주(州)⁸⁶⁾는 2년 까지 보존하는 차이가 난다.

또한 라스베거스 주의 경우 살인은 7년까지 보존하며, 경범죄는 1년, 무력행사는 90일 까지 보관하게 되어있다.⁸⁷⁾

84) Police Executive Research Forum,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2014, pp15-16.

85) Grand Forks Police Department, “Directive: Body-Worn Camera Recording Equipment,” Grand Forks Herald, revised November 26, 2014, p. 3, accessed January 14, 2015, <http://www.grandforksherald.com/sites/default/files/4113.pdf>(2016. 10. 25일 검색).

86) 08 New Orleans Police Department, “New Orleans Police Department Policy Manual, Body-Worn Camera Policy 447,” p. 8, accessed January 14, 2015, <http://www.fopno.com/uploads/files/Policy%20447%20-%20PR447%20-%20Body%20Worn%20Camera%20EFF%203-30-14.pdf>. (2016. 10. 25일 검색).

87) 9 Las Vega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GO-009-14 Supp No 2, Aug. 28, 2014,” accessed December 30, 2014, p. 2, <https://static.spokanecity.org/documents/police/accountability/bodycamera/las-vegas-policy.pdf>. (2016. 10. 25일 검색).

따라서 현행 경찰청 훈령인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 규칙을 세워 미국처럼 보존기간을 달리하여 실효성 있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웨어러블 폴리스캠 기기 선택 기준의 개선안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효율적인 활성화 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기기 자체에 대한 의견으로 보안을 이유로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기기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것은 경찰기관으로서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보안상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기계적인 결함이나 녹화시 고화질의 촬영 영상, 저장 용량의 증가 등 기계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현실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현장 경찰관들은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통한 영상 촬영보다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대신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현실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으며,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하고 있는 다수의 경찰관들은 시중에서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부착형 카메라 중에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기를 선택하여 사용한다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기계적인 결함에서 오는 문제점들은 즉시 해결이 될 수 있어 그 활용성 측면에서 더 좋아질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경찰관에 의해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염려 등의 보안 문제는 따로 보안에 관한 분야만 경찰청과 기계 업체와의 협의 하에 기술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차후 우리 경찰에서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기기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면 선택의 기준을 폭넓은 시각으로 받아 들이길 기대한다.

3.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 범위 개선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경찰관이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첫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에 영장에 의한 체포,⁸⁸⁾ 제200조의 3의 긴급체포,⁸⁹⁾ 제201조의 구속,⁹⁰⁾ 제

88) 제200조의2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한다. 다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④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89) 제200조의 3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212조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 체포로서 현행 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처럼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촬영할 수 있다.

둘째, 범죄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범행중이거나 범행 직전 또는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을 있을 때 촬영할 수 있다.

셋째,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 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①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②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③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에 촬영을 할 수 있다.

넷째, 피녹화자로 부터 녹화 요청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촬영을 할 수 있다.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90) 제201조(구속)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상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 범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의하면, 촬영 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할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며, 현실적으로는 현장에 도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상황 판단에 근거하여 촬영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시범 운영 중으로 다양한 촬영 케이스(사례)들이 많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시범운영 이후에는 다양한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여 명확한 촬영범위를 현장 경찰관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준다면,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촬영 범위에 관한 선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따른 불심검문, 집회·시위 현장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제6조에 규정하고 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회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할 수 있다.⁹¹⁾

그러나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 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도 촬영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충분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지

9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활동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14. 4. 9. 결정 참고.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훈령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4.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시스템의 실용적인 개선 방안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 현장에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착용하는 경찰관들은 특별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보통 웨어러블 폴리스캠 관리책임자나 담당 경찰관이 폴리스캠 사용법을 교육 받은 후, 전수하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 제15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하기 전에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교육 내용에는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법, 사용지침, 위법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관리책임자는 폴리스캠 사용자에게 사용법, 사용지침, 위법사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교육 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경찰관들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법 정도 이외에는 영상촬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례나 이로 인한 개인정보침해나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대한 교육의 부재는 현장에서 시민들과 폴리스캠 영상 촬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이러한 교육의 부재 부분들은 폴리스캠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과의 인터뷰에서 제기되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관리책임자가 교육 훈련을 책임지고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앞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활성화 된다는 전제하에 중앙경찰학교의 신입경찰관 교육과정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 과목을 개설한다면, 따로 경찰관서에서 교육 훈련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앙경찰학교에 강좌가 개설이 된다면, 앞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신입 경찰관들에게 사용법, 사용지침, 위법사례, 국내외 관련 판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체계적인 전문 교육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목개설로 인하여 웨어러블 폴리스캠에 관한 전문가의 교육을 받을 수 있어 교육 내용은 더욱 충실해질 것이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의 개혁은 결국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을 활성화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5.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방안

경찰청은 2015년 11월 행정자치부 ‘U-서비스 기반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확산 예산을 신청하였지만, 올 2016년도 U-서비스 예산 축소로 인하여 확산사업에서 제외가 되었다.

앞서 각 국의 선진국의 실태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는 엄청 많은 예산을 치안확보의 일환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활용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각 주마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구입하는데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⁹²⁾

92) 예를 들면, 미국의 경찰국에서는 약 800 달러에서 1200 달러 수준의 폴리스캠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초기 구입 비용 이외에, 배터리 교환이나 다른 하드웨어, 소프

예를 들면, 2014년 12월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경찰의 치안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면서 경찰과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투입되는 2억6300만 달러(한화 약 3,000억원)의 예산 중, 폴리스캠 5만 대 추가 확보에 7500만 달러(한화 약 855억원)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하는 지방정부에는 전체 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⁹³⁾

이러한 선진국의 폴리스캠 확대에 관한 추세에 비하면, 우리의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은 시범으로 끝나는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 사업 이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우리 경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에 따른 다양한 기계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반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사업은 중요하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하고 선진국에 걸맞게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폴리스캠이 국내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 확대 방안을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트웨어 구입에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데이터의 저장과 관리 비용 또한 적지 않다. 예컨대, 미국의 한 경찰국의 경우 900대의 부착 카메라를 사용하는데 약 67,500 달러(한화 약 7 천 만원)를 지불하였고, 2년 동안 영상을 저장하는데 약 111,000 달러(한화 약 1억 1,600 만원)를 지불하기로 하였는데, 이 같은 수치를 보면 구입 비용 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 지출 또한 큰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약 40%에 가까운 경찰국에서 폴리스캠을 도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비용 문제를 거론했을 정도이다.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Recommendations and Lessons Learned(Washington, DC, 2014), p. 32; 남궁 현, 앞의 글, 44면, 재인용.

93)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008742(2016. 10. 18 검색).

더불어 2016년에는 예산 축소로 인하여 확산사업에서 제외되었지만, 향후 행정자치부의 U-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지원 사업은 기술력을 검증하는 사업으로 우리 경찰도 이를 위해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지금 세계는 기술이 융합되고, 데이터가 힘을 갖는 초연결, 초지능 사회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들어왔다고 한다. 이러한 흐름은 경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2016년도에 들어와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웨어러블 폴리스캠(Wearable Police Cam)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후, 급속도로 빠르게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은 모든 범죄나 교통사고 등의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훌륭한하고 유용한 장비이고, 경찰과 시민 및 범죄자들과의 마찰과 충돌을 해결하면서 더불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비이다.

또한 경찰관들이 직무수행 중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신체에 부착하여 영상을 기록함으로써 공무를 집행할 때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경찰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폴리스캠을 착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이처럼 경찰관들에 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올바른 활용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더불어 경찰의 치안활동에 있어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현재 우리 경찰청은 용역으로 발주하여 직접 제작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100대를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3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하여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1년이 되어간다.

본 보고서의 본문에서는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시범운영을 통해 나타난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특히, 웨어러블 폴리스캠 사용시에 기계적

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은 현실성 있게 조치를 취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쉽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매년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현실은 전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일반 전문 신체 부착 카메라 회사에서 시판중인 부착형 카메라의 기술력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와 대등하게 현재 우리 경찰에서 운영하고 있는 웨어러블 폴리스캠도 새롭고 필요한 기능을 개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웨어러블 폴리스캠과의 서버연동 및 암호화, 촬영된 영상의 압축 관련 기술들의 개선 등 기술적인 부분의 개발연구도 중요한 앞으로의 과제이다. 이러한 앞으로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인 연구가 가능해야 함에도 이 또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무리 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술적인 문제점들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신착 부착 카메라 전문회사에서 전문적인 기술자들에 의해 개발·연구되어 시판되고 있는 신체 부착 카메라를 폴리스캠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도 다수 개진하고 있다.

즉, 부착형카메라를 제작하는 전문회사의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와이파이(wifi),⁹⁴⁾ 블루투스(bluetooth)⁹⁵⁾ 등을 활용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도 검토하여 실행 할 수도 있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폴리스캠에 관한 시스템 프로그램 등을 수시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굳이

94) WI-FI(IEEE 802.11b High Rate)란 하이파이(Hi-Fi, High Fidelity)에 무선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고성능 무선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랜 기술로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와이파이를 통해 촬영된 영상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95) 휴대폰과 휴대폰 또는 휴대폰과 PC간에 사진이나 벨소리 등 파일을 전송하는 무선전송기술을 말하는데, 현재 스마트폰과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연결하는 기술이 가능할 수 있다.

경찰에서 모든 전문적인 기술부분까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촬영 영상을 암호화하는 등 영상의 보안문제는 특별히 경찰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의견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실용적인 확대 방안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만한 중요한 견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경찰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웨어러블 폴리스캠 영상자료의 보관 및 관리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웨어러블 폴리스캠으로 촬영된 영상기록들이 범죄와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고, 차후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에서도 범죄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 피의자, 경찰관 모두에게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영상기록을 30일간만 보관하도록 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폐지된 살인죄의 경우에는 촬영 영상을 무기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웨어러블 폴리스캠 기기 선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폴리스캠이 보안을 이유로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활용하는 것은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보안상의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기계적인 결함이나 녹화 시 고화질의 촬영 영상, 저장 용량의 증가 등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현저하게 늦어지는 등 현실성을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촬영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되는 염려 등의 보안문제만 해결된다면, 시판되고 있는 기기들의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넓혀 실용성 측면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

셋째,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촬영 범위 개선으로 경찰관이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경찰관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로서 구체적인 사안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 규정하고 있다. 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의하면, 촬영 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사용할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며, 현실적으로는 현장에 도착하여 시각적으로 보여 지는 상황 판단에 근거하여 촬영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시범운영 이후, 다양한 여러 사례들을 분석하여 촬영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준다면, 현장 경찰관들의 촬영 범위에 관한 선택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폴리스캠 교육시스템의 실용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교육은 관리책임자나 담당 경찰관이 폴리스캠 사용법을 교육 받은 후, 전수하는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영상촬영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사례나 이로 인한 개인 정보침해나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찰관은 거의 없어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

따라서 차후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활성화 된다는 전제 하에 중앙경찰 학교의 신입경찰관 교육과정에 웨어러블 폴리스캠 교육 과목을 개설하여 사용법, 사용지침, 위법사례, 국내외 관련 판례 및 개인정보보호 등 체계적인 전문을 교육한다면 이전보다는 실용적인 교육시스템으로 교육 훈련이 될 것이다.

다섯째,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다. 2016년은 ‘U-서비스 기반 전자정부 지원사업’에 확산 예산을 신청하였지만, 제외가 되었다.

현재 시행중인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시범 사업이 앞으로 우리 경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에 따른 다양한 기계적, 시스템적인 부분 등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지만, 현실적으로 예산 반영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사업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진국에 걸맞게 우리도 빠른 시일 안에 웨어러블 폴리스캠이 국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는 무인자동차(driverless car), 드론(drones) 등 4차 산업혁명 명이 시작됨을 알리고 있으며, 경찰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걸맞게 우리 경찰에서도 웨어러블 폴리스캠을 시범운영한지도 어느 덧 1년이 되었다.

본 연구보고서에서 제시한 것처럼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노출되었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안도 제시하였다. 경찰에 의한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활용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한걸음씩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해 나간다면, 반드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이 되리라 확신한다.

[참고자료]

〈표 5-1〉 웨어러블 폴리스캠 관련 미국의 각 주(州)별 법률 규정

주(州)	법률
Alabama	X
Alaska	Alaska prohibits use of an eavesdropping device to hear or record any part of a conversation without consent, Alaska Stat. § 42.20.310(a) (2014). Silent recording is permitted within the bounds of Alaska's constitutional right to privacy.
Arizona	Arizona prohibits the use of a device to record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Ariz. Rev. Stat. Ann. § 13-3001(7) (2015)
Arkansas	Arkansas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Ark. Code Ann. § 5-60-120(a).
California	X
Colorado	Colorado prohibits intentional recording or overhearing of a conversation by a person who is not visibly present, C.R.S. § 18-9-304(1).
Connecticut	X
Delaware	Delaware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exhibiting a justifiable expectation that he or she is not being recorded, Del. Code Ann. tit. 11, § 2402(a). Video footage without sound is allowed.
Florida	Florida's statutes governing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re restricted to oral communications, suggesting that video alone is not subject to restrictions surrounding interception, Fla. Stat. §§ 934.02(2) and 934.02(3).
Georgia	X
Hawaii	X
Idaho	Under the Idaho Communications Security Act, it is a felony to record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Idaho Code Ann. § 18-6702(1)(a).
Illinois	X
Indiana	X
Iowa	Iowa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Iowa Code Ann. § 808B.1(8).

Kansas	X
Kentucky	Kentucky prohibits the intentional recording of any oral communication by means of a device without the consent of at least one party to the conversation. Ky. Rev. Stat. § 526.020.
Louisiana	Louisiana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La. Rev. Stat. Ann. § 15:1302(14).
Maine	Maine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Me. Rev. Stat. tit. 15, § 709(5) (2015).
Maryland	X
Massachusetts	Massachusetts prohibits the secret recording of any oral communication through the use of an intercepting device without consent from all parties. Mass. Gen. Laws ch. 272, § 99(B)(4).
Michigan	X
Minnesota	X
Mississippi	X
Missouri	Missouri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Mo. Rev. Stat. § 542.400(8).
Montana	Montana prohibits use of a hidden device to record conversations without consent of all parties. Mont. Code Ann. § 45-8-213(1)(c).
Nebraska	Nebraska considers it a felony to intentionally record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Neb. Rev. Stat. § 86-290(1)(a) (2014).
Nevada	X
New Hampshire	New Hampshire prohibits recording of any "verbal communication." N.H. Rev. Stat. c. 570, § A(1)(II).
New Jersey	New Jersey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Video footage without sound is allowed. N.J. Stat. Ann. § 2A:156A-3.
New Mexico	X
New York	X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s surveillance statute does not prohibit (and hence implicitly permits) video recordings without audio. <i>Kroh v. Kroh</i> , 567 S.E.2d 760, 763 (N.C. Ct. App. 2002).

North Dakota	North Dakota's statutes governing interception of communications are restricted to oral communications, suggesting that video alone is not subject to restrictions surrounding interception. N.D. Cent. Code § 12.1-15-04(5) and 04(4) (2015).
Ohio	X
Oklahoma	Oklahoma's surveillance statute does not prohibit (and hence implicitly permits) video recordings without audio of a given interaction. 13 Okla. Stat. § 176.2(12) (2015).
Oregon	Oregon prohibits "obtaining" any part of an oral communication. Or. Rev. Stat. § 165.535(1)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Wiretapping and Electronic Surveillance Control Act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Video footage without sound is allowed.
Rhode Island	Rhode Island prohibits intentional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R.I. Gen. Laws § 11-35-21(a)(1).
South Carolina	South Carolina considers it a felony to record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S.C. Code Ann. § 17-30-20(1).
South Dakota	South Dakota considers the use of a device to secretly overhear or record a conversation without consent a felony. S.D. Codified Laws § 23A-35A-20(2) (2015). Law enforcement officers acting in the ordinary course of duty are exempt. S.D. Codified Laws § 23A-35A-1(6) (2015). The requirement for recording of an oral communication suggests that silent recordings may be allowed.
Tennessee	Tennessee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Tenn. Code Ann. § 39-13-601(a)(1)(A).
Texas	Texas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Tex. Code Crim. Proc. art. 18.20, § 1(2).
Utah	Utah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Utah Code Ann. § 77-23a-3(13).
Vermont	X
Virginia	X
Washington	Washington's Privacy Act prohibits the recording of any private conversation. Wash. Rev. Code § 9.73.030(1)(b).
West Virginia	West Virginia's Wiretapping and Electronic Surveillance Act prohibits recording of anything said by a person unaware he or she is being recorded. W. Va. Code § 62-1D-3(a)(1), W. Va. Code § 62-1D-2(h).
Wisconsin	X
Wyoming	X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경찰청,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싱가포르 제도, 경찰청, 2015. 3, 경찰청 정보통신담당, 경찰청 내부자료.
- 경찰청,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이탈리아 제도, 2015. 4, 경찰청 정보통신 담당, 경찰청 내부자료.
- 경찰청,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두바이 실태, 2015. 3, 경찰청 정보통신 담당, 경찰청 내부자료.
-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배부 현황, 2016, 경찰청, 내부자료.
- 경찰청, 2015- 2016 웨어러블 폴리스캠 월별 입출고 및 영상등록 현황, 2016. 10, 경찰청, 내부자료.
- 경찰청,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범운영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2016. 5, 경찰청 내부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 관련 제도개선 권고”, 2014. 4. 9. 결정.
- 김영기,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립 부인과 증거능력 부여 방안”, 형사판례 연구(19),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1.
- 金哲洙, 「憲法學新論(第)20全訂新版」, 博英社, 2010.
- 남궁 현, 경찰활동에의 신체 부착 카메라 관련 논점과 한국 경찰에의 적용 전망,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23호, 2014.
- 박남춘, 공무집행 방해 구속 2년간 3,054명 구속영장 기각된 사람도

- 1,500명 넘어, 2016. 9. 21, 더불어 민주당 보도자료.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5.
- 이상학, 폴리스캠의 법적 문제에 관한 일고찰, 世界憲法研究(第)22卷 2號, 2016.
- 주프랑스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프랑스 경찰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 주밴쿠버총영사관, 웨어러블 카메라 관련 캐나다 경찰자료, 경찰청 내부자료.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5 정보화통계집, 2014. 12. 31.
- 한국인터넷진흥원, 미국 LA경찰, 유니폼에 동영상 촬영 장치 ‘바디 카메라’ 부착.
- 허태준, 볼티모어 시 경찰 바디 캠 전격 지급, 워싱턴 중앙일보, 2016. 3. 1

II. 외국문헌

-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 Implementing a Body-worn Camera Program: Recommendations and Lessons Learned (Washington, DC, 2014).
- Farrar, T., Self-awareness to Being Watched and Socially-desirable Behavior: A Field Experiment on the Effect of Body-worn Cameras on Police Use-of-force(Washington, DC: Police Foundation, 2013).
- Grand Forks Police Department, “Directive: Body-Worn Camera Recording Equipment,” Grand Forks Herald, revised November 26, 2014.

Kahan, D. M., Hoffman, D. A., & Braman, D., “Whose Eyes Are You Going to Believe? Scott v. Harris And The Perils of Cognitive Illiberalism”, Harvard Law Review, Vol. 122 (2009).

Las Vegas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 “GO-009-14 Supp No 2, Aug. 28, 2014,” accessed December 30, 2014.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A Primer on Body-Worn Cameras for Law Enforcement(Washington DC, 2014).

New Orleans Police Department, “New Orleans Police Department Policy Manual, Body-Worn Camera Policy 447. accessed January 14, 2015.

White, M., Police Officer Body-Worn Cameras(Washington, DC: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2014.

III. 판례 및 경찰 자료

헌재 2003. 10. 30. 선고, 2002 헌마 518, 헌재판례집 제15권 2집.

헌재 2008. 4. 24. 선고, 2006 헌마 402·531(병합), 헌재판례집 제20권 1집.

헌재 2005. 5. 26. 선고, 99 헌마, 513, 2004 헌마 190(병합), 헌재판례집 제17권 1집.

헌재 2005. 7. 21. 2003 헌마 282, 헌재판례집 17-2.

헌재 2008. 10. 30. 선고, 2006 헌마 1401·1409(병합), 헌재판례집 제20권 2집.

대법원판례 1996. 8. 20, 94 다 29928, 공보 1996.

대법원판례 1998. 7. 24, 96 다 42789.

대법원판례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대법원 99도 2317.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서울고법 1987. 2. 10. 선고 86노3515 제2형사부 판결.

Floyd v. City of New York 2013.

IV. 기 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3974&cid=50324&categoryId=50324>(2016. 8. 3 검색).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4425&cid=42107&categoryId=42107>(2016. 8. 3 검색).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11572(2016. 3. 10 검색).

<https://estima.wordpress.com>(2016. 5. 13 검색).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317919(2016. 6. 13 검색).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4243619(2016. 6. 13 검색).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75142(2016. 3. 10 검색).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928323(2016. 3. 10 검색).

-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Introduction(2016. 9. 12 검색).
- http://www.police.nsw.gov.au/community_issues/body_worn_video/more_information#Research(2016. 9. 12 검색).
-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7712>(2016. 10. 23 검색).
- <http://arstechnica.co.uk/tech-policy/2016/10/body-cams-taser-london-police-rollout/> (2016. 10. 18 검색).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8759318>(2016. 10. 18 검색).
-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6/sep/29/police-with-body-cameras-receive-93-fewer-complaints-study>(2016. 10. 18 검색).
- <http://terms.naver.com>(2016. 10. 5 검색).
- <http://www.cbc.ca/news/technology/body-camera-police-forces-canada-1.3519530> (2016. 10. 5 검색).
- [https://en.wikipedia.org/wiki/Freedom_of_Information_and_Protection_of_Privacy_Act_\(Alberta\)](https://en.wikipedia.org/wiki/Freedom_of_Information_and_Protection_of_Privacy_Act_(Alberta))(2016. 10. 18 검색).
- <https://www.calgary.ca/SitePages/cocis/default.aspx>(2016. 10. 18 검색)
- <http://www.grandforksherald.com/sites/default/files/4113.pdf>(2016. 10. 25 검색).
- <http://www.fopno.com/uploads/files/Policy%20447%20-%20PR447%20-%20Body%20Worn%20Camera%20EFF%203-30-14.pdf>. (2016. 10. 25 검색).

<https://static.spokanecity.org/documents/police/accountability/bodycamera/las-vegas-policy.pdf>. (2016. 10. 25 검색).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008742(2016. 10. 18 검색).